



■ 정책보고서 2014-

직장어린이집 설치현황 실태조사 연구

김은정 · 유재언 · 최인선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책임연구자】

김은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주요저서】

보육서비스 공급 적정성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소득계층별 출산양육 행태 분석 및 정책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공동연구진】

유재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최인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발간사 <<

최근 지속적인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으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그에 따른 노동력 확보문제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2013년도부터 시행된 정부의 전계층 무상보육정책은 보육의 국가적 책임을 한층 강화한 측면이 있으며 보육정책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관심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의 돌봄 노동에 대한 역할 분담의 차원에서 기업의 책임도 강화되는 추세에 있으며, 그 일환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직장어린이집은 양육환경의 개선을 통한 일가정 양립가능성을 증대시키고 여성의 경력단절의 위험성을 낮춘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지난 10년간 여성 경제 활동 참가율에 큰 변화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출산 및 육아 등의 이유로 경력단절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양육과 일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간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정책을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시함과 동시에 설치의무 사업장 중 미이행 사업장에 대하여 명단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에 대한 검토와 대상 사업장의 설치의무이행여부를 면밀히 조사하여 미이행 사업장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해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은 보건복지부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연구자 개별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14년 6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최 병 호

목 차

제1장 서론	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5
제2장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제도 현황	9
제1절 법적 근거 및 설치의무 제도	9
제2절 직장어린이집 지원정책 현황	10
제3절 직장어린이집 설치현황	13
제3장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 현황	13
제1절 조사개요	13
제2절 일반현황	15
제4장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현황	13
제1절 일반 현황	14
제2절 직접설치 사업장 현황	25
제3절 보육수당 지급 사업장 현황	36
제4절 위탁보육 사업장 현황	86
제5장 미이행 사업장 현황	77
제1절 일반 현황	77
제2절 명단공표 대상 사업장 현황	38

제6장 결론 및 제언	39
제1절 결론	3
제2절 제언	4
참고문헌	9
부록	100
부록1 조사표	100
부록2 상시 근로자 연령에 따른 현황	101
부록3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111

표 목차

<표 2-1> 영유아보육법 상 직장어린이집 설치 관련 조항 (2014.5.12.기준)	1	1
<표 2-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직장어린이집 설치 관련 조항 (2014.5.12.기준)	1	1
<표 2-3> 고용보험법 상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관련 조항 (2014.5.12.기준)	7	1
<표 2-4>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제도 개요	9	1
<표 2-5> 정부의 직장어린이집 지원정책(직접지원)	1	2
<표 2-6> 정부의 직장어린이집 지원정책(간접지원)	3	2
<표 2-7>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의 연도별 이행 현황(2006~2013년)	7	2
<표 3-1>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별 현황	5	3
<표 3-2>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의 상시 여성근로자 수별 현황	6	3
<표 3-3>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연령대별 현황	7	3
<표 3-4>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의 보육수요 규모별 현황	7	3
<표 3-5>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의 시도 및 사업장 유형별 현황	9	3
<표 4-1> 사업장 유형별 의무 이행 현황	4	4
<표 4-2> 학교 유형별 의무 이행 현황	5	4
<표 4-3> 기업 유형별 의무 이행 현황	5	4
<표 4-4> 사업장 규모별 (상시 근로자 수) 의무 이행 현황	6	4
<표 4-5> 사업장 규모별 (상시 여성근로자 수) 의무 이행 현황	7	4
<표 4-6> 보육수요별 의무 이행 현황	8	4
<표 4-7> 상시 근로자 연령대별 의무 이행 현황	9	4
<표 4-8> 지역별 의무 이행 현황	1	5
<표 4-9> 직장어린이집 직접설치 사업장의 규모별 (상시 근로자 수) 현황	2	5
<표 4-10> 직장어린이집 직접설치 사업장의 규모별 (상시 여성 근로자 수) 현황	3	5
<표 4-11> 직장어린이집 직접설치 사업장의 보육수요별 현황	4	5
<표 4-12> 직장어린이집 직접설치 사업장의 지역별 현황	5	5
<표 4-13> 직장어린이집 설치 형태별 현황	7	5
<표 4-14> 직장어린이집 운영 형태별 현황	8	5
<표 4-15> 직장어린이집 규모별 정원·현원 현황	9	5
<표 4-16> 직장어린이집 정원 충족률 및 사업장 근로자 자녀비율 현황	0	6
<표 4-17>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현황	1	6
<표 4-18> 직장어린이집 인력 지원 현황	2	6

<표 4-19> 보육수당 지급 사업장의 규모별 (상시 근로자수) 현황	3	6
<표 4-20> 보육수당 지급 사업장의 규모별 (상시 여성근로자 수) 현황	4	6
<표 4-21> 보육수당 지급 사업장의 보육수요별 현황	5	6
<표 4-22> 보육수당 지급 사업장의 지역별 현황	6	6
<표 4-23> 보육수당 지급 사업장의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사유	7	6
<표 4-24> 보육수당 지급 사업장의 직장어린이집 설치계획	7	6
<표 4-25> 위탁보육 사업장의 규모별 (상시 근로자 수) 현황	8	6
<표 4-26> 위탁보육 사업장의 규모별 (상시 여성근로자 수) 현황	9	6
<표 4-27> 위탁보육 사업장의 보육수요별 현황	0	7
<표 4-28> 위탁보육 사업장의 지역별 현황	1	7
<표 4-29> 위탁보육 사업장의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사유	2	7
<표 4-30> 위탁보육 사업장의 직장어린이집 설치계획	3	7
<표 5-1> 미이행 사업장 규모별 (상시 근로자 수) 현황	7	7
<표 5-2> 미이행 사업장의 규모별 (상시 여성근로자 수) 현황	8	7
<표 5-3> 미이행 사업장의 보육수요별 현황	9	7
<표 5-4> 미이행 사업장의 지역별 현황	0	8
<표 5-5> 미이행 사업장의 미이행 사유	1	8
<표 5-6> 미이행 사업장의 향후 이행계획	2	8
<표 5-7> 명단공표 제외 사유별 현황	3	8
<표 5-8> 명단공표 대상 사업장의 규모별 (상시 근로자수) 현황	4	8
<표 5-9> 명단공표 대상 사업장의 규모별 (상시 여성근로자 수) 현황	5	8
<표 5-10> 명단공표 대상 사업장의 보육수요별 현황	6	8
<표 5-11> 명단공표 대상 사업장의 지역별 현황	7	8
<표 5-12> 명단공표 대상 사업장의 미이행 사유	8	8
<표 5-13> 명단공표 대상 사업장의 향후 이행계획	9	8
<부록표 2-1>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 상시 근로자 연령대별 수에 따른 이행 현황	0	1
<부록표 2-2> 직장어린이집 직접설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연령대 및 유형별 현황	7	1
<부록표 2-3> 보육수당 지급 사업장 상시 근로자 연령대 및 유형별 현황	8	1
<부록표 2-4> 위탁보육 사업장 상시 근로자 연령대 및 유형별 현황	9	1
<부록표 2-5>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상시 근로자 연령대 및 유형별 현황	0	1

그림 목차

[그림 2-1]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관련 주요 부처 및 관계 법령	0	1
[그림 2-2]	직장어린이집 지원체계	0	2
[그림 2-3]	직장어린이집 연도별 설치·운영 현황(1993-2013년)	4	2
[그림 2-4]	직장어린이집 시도별 설치·운영 현황(2013년)	5	2
[그림 2-5]	직장어린이집 지역유형별 설치·운영 현황(2013년)	5	2
[그림 2-6]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의 연도별 이행 현황(2006~2013년)	7	2
[그림 3-1]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 조사 및 명단공표 확정 절차	4	3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자녀돌봄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역할을 확대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함.
 - 자녀돌봄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방법으로 직장어린이집은 보육환경의 개선을 통한 일·가정 양립가능성을 증대시킴과 동시에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속하고 활성화 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음.
 - 이러한 배경에서 2005년 영유아보육법에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었으며,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에서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 공동 설치·운영, 위탁보육, 보육수당의 대체수단으로 설치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12년부터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이를 위해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의 이행현황 등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됨.
- 본 연구의 목적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 현황과 대상 사업장의 설치의무 이행 현황을 면밀히 조사하여 미이행 사업장 현황과 미이행 사유 등을 파악하여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 근거자료를 확보하고, 관련 현황을 분석하여 향후 공표제도의 실효성을 증대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생성하는 것임.

2. 주요 연구결과

- 본 조사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 1,074개소(2013년도 12월말 기준)를 대상으로 이행여부 및 이행방법, 미이행 사유 등을 조사함.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 1,074개소 중에서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사업장은 877개소(81.7%)이고, 미이행 사업장은 197개소(18.3%)임.
- 직접설치, 보육수당, 위탁보육의 이행수단 중에서 직접설치가 534개소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보육수당 242개소(22.5%), 위탁보육 101개소(9.4%) 순으로 나타남.
- 전년도 발표(‘12년 9월말 기준)와 비교했을 때 이행률은 7.4%p 상승하였고, 직장어린이집 직접설치 비율도 전년대비 10.6%p 증가함.

〈요약표 1〉 사업장 유형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현황

(단위 : 개소, %)

구분	의무사업장 (A=B+C)	이행 (B)				미이행 (C)
		계	설치	수당	위탁	
합계	1,074 (100.0)	877 (81.7)	534 (49.7)	242 (22.5)	101 (9.4)	197 (18.3)
국가기관	110 (10.2)	100 (90.9)	83 (75.5)	7 (6.4)	10 (9.1)	10 (9.1)
지자체	155 (14.4)	152 (98.1)	78 (50.3)	70 (45.2)	4 (2.6)	3 (1.9)
학교	95 (8.9)	73 (76.8)	33 (34.7)	33 (34.7)	7 (7.4)	22 (23.2)
기업 (공사 등 포함)	714 (66.5)	552 (77.3)	340 (47.6)	132 (18.5)	80 (11.2)	162 (22.7)

- 사업장 유형별 의무이행 현황을 보면, 전체 1,074개소 사업장 중 714개소(66.5%)가 일반기업이었고, 지자체 155개소(14.4%), 국가기관 110개소(10.2%), 학교 95개소(8.9%)인 것으로 조사됨.

○ 각 유형별 의무이행 비율을 살펴보면, 지자체 98.1%, 국가기관이 90.9%의 높은 이행률을 보인 반면, 학교와 공사 등을 포함한 기업의 이행률은 각각 76.8%, 77.3%로 나타남.

- 국가기관 110개소 중 직접설치 83개소(75.5%), 위탁보육 10개소(9.1%), 보육수당 7개소(6.4%)인 것으로 나타나 직접설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지자체의 경우 155개소 중 78개소(50.3%)는 직접설치, 70개소(45.2%)는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위탁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는 4개소로 조사됨.
- 학교는 95개소 대상사업장 중 33개소(34.7%)가 직접 설치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33개소(34.7%)가 보육수당지급, 7개소(7.4%)가 위탁보육을 실시함.
- 기업의 경우 714개소 중 340개소(47.6%)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고, 보육수당 132개소(18.5%), 위탁보육 80개소(11.2%)인 것으로 조사됨.

<요약표 2> 사업장 규모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현황

(단위 : 개소, %)

구 분		계	국가	지자체	학교	기업
여성 300명 이상 500명 미만	근로자 의무사업장	8	1	3	-	4
	이행사업장	8	1	3	-	4
	이행률	100.0%	100.0%	100.0%	-	100.0%
근로자 500명 이상 1,000명 미만	근로자 의무사업장	567	60	81	49	377
	이행사업장	417	50	79	34	254
	이행률	73.5%	83.3%	97.5%	69.4%	67.4%
근로자 1,000명 이상	근로자 의무사업장	499	50	71	45	333
	이행사업장	452	49	70	39	294
	이행률	90.6%	98.0%	98.6%	86.7%	88.3%

□ 사업장 규모별 설치의무 이행현황 <요약표 2>를 살펴보면,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 1,000명 미만 규모의 567개소 사업장은 73.5%의 이행률을 기록하였고, 근로자 1,000명 이상 규모의 452개소 사업장 이행률은 90.6%로 조사됨.

<요약표 3> 사업장 유형별 명단공표 대상 현황

(단위: 개소, %, 명)

구분	계	국가	지자체	학교	기업
미이행 사업장	197 (100.0)	10 (5.1)	3 (1.5)	22 (11.2)	162 (82.2)
명단공표 대상 사업장	162 (100.0)	-	1 (0.6)	19 (11.7)	142 (87.7)

□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197개소 중에서 35개소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건축비용의 일부를 집행하는 등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경우’의 사유로 명단 공표에서 제외됨 <요약표 3>.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명단공표 대상 사업장 162개소 중에서 기업이 142개소, 학교 19개소, 지자체 1개소임.

○ 앞서 미이행 사업장에 포함되었던 국가기관 10개 사업장은 모두 현재 설치중인 사업장으로 명단공표대상에서 제외됨.

<요약표 4> 사업장 유형별 설치의무 미이행 사유

(단위 : 개소, %)

미이행 사유	계	국가	지자체	학교	기업
전체	234* (100.0)	-	2 (100.0)	33 (100.0)	199 (100.0)
보육수요 부족	52 (22.2)	-	-	7 (21.2)	45 (22.6)
재정 부담	43 (18.4)	-	1 (50.0)	8 (24.2)	34 (17.1)
장소확보 곤란	93 (39.7)	-	1 (50.0)	10 (30.3)	82 (41.2)
기타**	16 (6.8)	-	-	6 (18.2)	10 (5.0)
무응답	30 (12.8)	-	-	2 (6.1)	28 (14.1)

주) * 미이행 공표 사업장 162개소가 복수응답하여 전체응답사례는 234개로 나타남.

** 환경오염 및 안전우려, 원거리 위치, 2~3교대 근무자 다수 등

□ 명단공표 대상 사업장의 미이행 사유는 보육수요 부족, 재정부담, 장소확보 곤란, 기타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음 <요약표 4>.

○ 미이행 사유로 가장 많이 응답한 항목은 장소확보 곤란(39.7%)이었고, 이어서 보육수요 부족(22.2%), 재정 부담(18.4%), 기타(6.8%) 순으로 조사됨.

〈요약표 5〉 사업장 유형별 향후 이행계획

(단위 : 개소, %)

미이행 사유	계	국가	지자체	학교	기업
전체	162 (100.0)	-	1 (100.0)	19 (100.0)	142 (100.0)
설치	44 (27.2)	-	1 (100.0)	7 (36.8)	36 (25.4)
위탁보육	25 (15.4)	-	-	4 (21.1)	21 (14.8)
계획 없음	51 (31.5)	-	-	5 (26.3)	46 (32.4)
무응답	42 (25.9)	-	-	3 (15.8)	39 (27.5)

□ 명단공표 대상 사업장들의 향후 이행계획을 살펴보면 27.2%(44개소)는 향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응답하였고, 15.4%(25개소)는 위탁보육을 통한 이행계획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 반면, 명단공표 대상 사업장의 절반 이상은 이행계획이 없거나(31.5%), 해당 문항에 무응답(25.9%) 하였음.

3. 결론

□ 올해 조사결과를 전년도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이행률은 74.3%에서 81.7%로 7.4%p 상승하였고 직장어린이집 직접설치 비율도 전년대비 10.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의무설치 이행 기업 비율이 늘고 특히 시설을 직접 설치한 비율이 늘었으며, 이에 따라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명단공표 수단이 어느 정도 실효성을 거두고 있다고 판단됨.

*주요용어: 직장어린이집, 명단공표제도, 직장어린이집 설치현황 실태조사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으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그에 따른 노동력 확보문제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는 가운데 정부는 출산을 제고와 노동력 확보전략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출산을 제고를 위한 주요 정책은 보육환경 개선에 중심을 두고 있으며 노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은 여성노동력의 확보와 정년연장 등을 통한 고령노동력 확보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다. 보육환경의 개선 측면에서 정부는 자녀돌봄에 대한 국가사회의 역할을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노동력 확보 측면에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들을 시도하고 있다.

2013년도부터 시행된 정부의 전 계층 무상보육정책은 보육의 국가적 책임을 한층 강화한 측면이 있으며 보육정책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관심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동안 가정 안에서 이루어졌던 자녀돌봄에 대한 사회의 역할 분담 차원에서 기업의 역할과 책임이 확대되고 있으며 그 중의 하나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이다. 직장어린이집은 보육환경의 개선을 통한 일·가정 양립가능성을 증대시킴과 동시에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속하고 활성화 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으며 그 필요성은 증대되고 있다.

지난 10년간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에 큰 변화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출산 및 육아 등의 이유로 경력단절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양육과 일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도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운영이 여성의 노동공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바가 있다(김정호, 2013). 또한 김미정 외 (2012)의 연구에서도 기업의 직장보육서비스 제공은 근무만족도 및 생산성 증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김태홍(2001)의 연구에 따르면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주된 이유로 조사대상기업의 75%가

육아는 근로자의 가정영역으로 보고 기업이 근로자의 가정영역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부터 저출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논의가 활발해지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기업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진 가운데 기업은 더 이상 육아문제를 가정의 문제로 치부하지 못하게 되었다. 또한 법적 강제성은 유명무실했지만 2005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사업주가 단독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동설치하거나,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 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기업의 보육지원 책임에 대해서 기업은 더 이상 자유로운 위치에 있을 수 없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입장에서 직장어린이집 설치 비용 및 운영상의 부담과 함께 법적 강제성이 미미하여 활성화 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기업의 입장을 고려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정책을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시함과 동시에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좀 더 강화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2년에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미이행한 사업자의 명단을 공표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현행 영유아보육법령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직장보육시설을 직접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위해 위탁보육을 시행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명단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3년부터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명단공표가 이루어지고 있다.

미이행 사업장의 명단공표를 위해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에 대한 검토와 대상 사업장의 설치의무 이행여부를 면밀히 조사하여 이행여부 판단에 대한 근거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 현황과 대상 사업장의 설치의무 이행 현황을 면밀히 조사하여 미이행 사업장 현황과 미이행 사유 등을 파악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 근거자료를 확보하고, 관련 현황을 분석하여 향후 공표제도의 실효성을 증대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생성하는데 있다.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현황을 파악하는 내용으로서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 내용 및 방법을 소개하고, 2장에서는 현재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관련 법적 근거 및 지원정책, 직장어린이집 설치 현황을 제시하고 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와 관련하여 영유아보육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상 관련내용을 소개하고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명단공표제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3장에서는 본 연구를 위한 조사개요와 조사절차에 대한 소개와 함께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규모별, 지역별 현황을 제시하고 있다. 4장에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대상사업장들의 설치의무 이행현황을 분석하여 사업장의 일반 특성과 이행사업장 현황을 직접설치 사업장, 보육수당지급 사업장, 위탁보육 이행 사업장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5장에서는 미이행 사업장 현황을 별도로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다. 미이행 사업장 중 명단공표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제외한 사업장에 대한 분석도 추가로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본 조사연구를 바탕으로 결론 및 향후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및 실태조사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본 조사연구를 위해서 국민건강보험과 고용보험자료를 바탕으로 조사대상 사업장을 선정하였으며, 조사대상 사업장 선정이 완료된 이후 본 조사를 위해서 개발된 조사표를 해당기업에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전화조사원을 통한 지속적인 조사협조 독려를 실시하였다. 조사표의 회신은 우편, 전자 우편, 팩스를 이용하였으며 회신된 조사표는 각 사례별로 코딩되어 기초분석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었다.

우편조사는 1회에 그치지 아니하고 미회신 사업장에 대해서는 2차, 3차로 조사협조 요청 우편을 재발송 하여 회신율을 높였다. 실사가 요구된다고 판단한 일부 업체에 대해서는 연구진이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최종적으로 미이행 사업장 확정에 앞서서는 해당기업에 대해서 미이행 사유에 대한 소명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였으며, 명단공표 심의 위원회는 본 연구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2차의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 명단공표 사업장을 확정하였다.



제2장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제도 현황

제1절 법적 근거 및 설치의무 제도

제2절 직장어린이집 지원정책 현황

제3절 직장어린이집 설치현황

2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제도 < 현황 <

제1절 법적 근거 및 설치의무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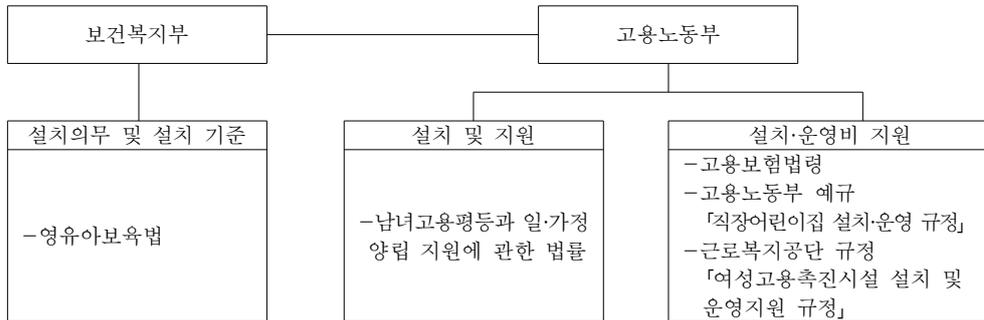
1. 직장어린이집 개요 및 관련 법령

직장어린이집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정의하고 있다(영유아보육법 제10조). 영유아보육법상 직장어린이집의 규모는 상시 영유아 5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어야 하며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가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직장어린이집은 인가 신청 시 지역의 보육수요에 의해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직장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상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건물에 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에는 안전사고와 재난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 건물 내 5층까지 보육실을 설치할 수 있는데, 2013년 12월부터는 설치기준이 완화되어 직장어린이집을 사업장 밖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산업단지 관리공단·입주기업협의체·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업단지 내에 해당기관 및 산업단지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산업단지에 있는 건물 5층까지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상시 영유아 20인 이하 규모의 직장어린이집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같이 가정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관련된 법은 주무부처에 따라 크게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로 구분하여 볼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영유아보육법」을 통해서, 고용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등을 통해서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여하고 있다 [그림 2-1] .

[그림 2-1]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관련 주요 부처 및 관계 법령



자료: 김미정의 (2012). 기업의 직장보육서비스 지원 사례 및 효과성 분석. p65.

2.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 기준, 설치의무 이행 방법과 설치·운영 기준 및 인가 등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2014년 5월 기준으로, 「영유아보육법」에서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관련된 조항 및 본문을 정리하면 <표 2-1>과 같다. 사업장의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가 500명 이상(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이면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의무가 있으며 상시 여성근로자 및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은 전체 기업규모가 아닌 사업이 행하여지는 인적·물적 시설이 존재하는 장소적 범위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상시 근로자에는 정규직뿐만 아니라 임시직과 일용직 등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4년도 보육사업안내, p6).

사업장의 사업주가 단독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 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 설치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동직장어린이집이란 사업주 2인 이상 또는 사업주 단체가 참여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으로, 지원 대상에 따라 일반 공동직장어린이집,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직장어린이집,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으로 구분된다. 일반 공동직장어린이집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2개 이상의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해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이다.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직장어린이집은 우선지원 대상기업들이 컨소시엄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경우로 일반 공동직장어린이집에 비해 시설전환비 등 소요비용에 대한 지원비율이 더 높다.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은 산업단지관리공단 및 산업단지 등에 입주한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의 컨소시엄으로 참여 사업장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으로 시설전환비의 한도액과 지원비율이 가장 높다.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고자 할 경우, 보육수당은 연령별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의 50% 이상을 사업주가 영유아 보호자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8조)1). 위탁보육을 통해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고자 할 경우 또한 위탁 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50% 이상을 사업주가 위탁 계약을 맺은 지역의 어린이집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 그러나 영유아보육법상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하여 어떠한 제재 조치도 취할 수 없었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2012년 영유아 보육법의 개정을 통하여 미이행 사업장에 대하여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영유아보육법 제 14조의 2).

〈표 2-1〉 영유아보육법 상 직장어린이집 설치 관련 조항 (2014.5.12.기준)

조항	본문
법 제10조 (어린이집의 종류)	직장어린이집: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한다)
법 제14조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위탁계약 및 보육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법 제14조의2 (직장어린이집의 설치의무 미이행)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조사기관"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 서도 같다)의 장은 제14조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에 관한 실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기관의 장은 실태 조사를 완료한 후 그 결과

1) 2014년 연령별 정부 보육료 지원 단가(월)는 만0세 394천원, 만1세 347천원, 만2세 286천원, 만3~5세 220천원, 장애아 394천원임.

12 직장어린이집 설치현황 실태조사 연구

<p>사업장 명단 공표 등)</p>	<p>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장(“미이행 사업장”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제1항에 따른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건복지부에서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2.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 3.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4. 사업주를 대표하는 사람 5.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6. 그 밖에 보육전문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p>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명단공표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단 공표 대상자임을 통지하여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p> <p>⑤ 제2항에 따른 공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6개월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p> <p>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에 관한 실태 조사의 내용과 방법,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및 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시행령 제20조 (직장어린이집의 설치)</p>	<p>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한다.</p> <p>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둘 이상의 국가행정기관이 청사를 공동으로 사용하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p> <p>③ 제2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그 설치·관리를 주관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청사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관 간의 협의를 통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사를 관리하는 기관(청사가 국유재산이 아닌 경우에는 청사의 주된 기능과 관련이 있는 기관) 2. 보육 수요가 가장 많은 기관 <p>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치되는 직장어린이집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수에 비례하여 각 기관이 부담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비용 분담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설치·관리를 주관하는 기관과 이용 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p> <p>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장 외의 사업주는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를 보육하기 위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시행령 제20조의2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 조사 기관)</p>	<p>① 법 제14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부 2. 시·도 <p>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제1항 각 호의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장에 대하여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에 관한 실태 조사(이하 “의무이행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부장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교육행정기관(교육부는 제외한다) 및 교육연구기관인 사업장 2. 시·도지사: 해당 시·도의 관할 구역에 있는 지방행정기관(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

	<p>은 제외한다)인 사업장</p> <p>3. 보육복지부장관: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장을 제외한 사업장</p> <p>③ 보건복지부장관 및 조사기관의 장은 의무이행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의무이행 실태조사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p>
시행령 제20조의3 (의무이행 실태조사의 방법 등)	<p>① 법 제14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및 조사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의무이행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p> <p>② 법 제14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조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다음 해 2월 말 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의무이행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장의 명칭, 상시 근로자 수 및 상시 여성근로자 수 등 사업장에 관한 기본사항 2. 해당 사업장의 보육 대상 영유아의 수 및 보육 수요 3. 법 제14조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 실태 4. 법 제14조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이행 계획(이행시기가 포함되어야 한다)
시행령 제20조의 4 (명단 공표의 시기·방법 등)	<p>① 법 제14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4월 30일까지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명단에는 해당 사업장의 명칭, 주소, 상시 근로자 수, 상시 여성근로자 수, 보육 대상 영유아의 수 및 미이행 사유가 포함되어야 한다.</p>
시행령 제20조의5 (명단 공표 제외 사유)	<p>법 제14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사업장이 제20조제1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이 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건축비용의 일부를 집행하는 등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경우 3.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의 특성상 보육 수요가 없는 경우 등 명단의 공표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행령 제20조의 6 (직장어린이집명단 공표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p>① 법 제14조의2제3항제6호에서 “보육전문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보육 관련 학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등 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말한다.</p> <p>②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이하 “명단공표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법 제14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p> <p>③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p> <p>④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명단공표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p> <p>⑤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p> <p>⑥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⑦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⑧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명단공표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p> <p>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p>

14 직장어린이집 설치현황 실태조사 연구

	<p>사항은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시행령 제20조의7 (소명기회 부여)</p>	<p>보건복지부장관은 제20조의4에 따라 명단을 공표하기 전에 법 제14조의2제4항에 따라 명단공표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사업주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p>
<p>시행령 제25조 (사업주의 비용 보조)</p>	<p>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은 사업주는 법 제37조에 따라 그 어린이집의 운영 및 수탁 보육 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한다.</p>
<p>시행규칙 제4조의2 (어린이집의 설치 전 상담)</p>	<p>법 제13조제1항 및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자는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 등 지역적 여건과 어린이집 설치기준 등에 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미리 상담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p>
<p>시행규칙 제5조 (어린이집의 설치 인가 등)</p>	<p>① 법 제13조제1항 및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24호서식의 어린이집 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어린이집 및 설비 목록 5.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7.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8.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설립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9.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 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0.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11.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 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p>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와 법인등기사항확인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인가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현황을 매 반기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시행규칙 제5조의4 (산업단지 내의 어린이집)</p>	<p>「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6제1항제1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관리단, 같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공단·입주기업협의체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9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법 제13조에 따른 설치인가를 받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라 한다)에 해당 기관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지원기관의 근로자를 위하여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p>

시행규칙 제6조 (공동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때에는 어린이 집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협의하기 위하여 조합 또는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7조 (직장어린이집의 위탁)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는 사업주가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위탁기간·보육비용 등을 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8조 (보육수당의 지급)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육수당은 연령별 정부보육료 지원 단가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자료: 「영유아보육법」 . <http://www.lawnb.com/>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기존의 남녀고용평등법이 여성의 노동력 확보와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의 확대 측면에서 2007년 법제명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남녀고용평등뿐만 아니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2014년 5월 기준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면 <표 2-2>와 같다. 해당 법령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유·탁아 등 육아에 필요한 어린이집(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며 대상 사업장 및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을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밖에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에 필요한 지원 및 지도를 하고 있으며 그 밖의 보육관련 지원 사항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주 외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도 직장어린이집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정보 제공, 상담 및 비용의 일부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에서만 특별히 강제하고 있는 기준은 없으며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공공복지시설의 설치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근로자를 위한 교육·육아주택 등 공공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표 2-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직장어린이집 설치 관련 조항 (2014.5.12.기준)

조항	본문
법 제21조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지원 등)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유·탁아 등 육아에 필요한 어린이집 (이하 “직장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할 사업주의 범위 등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장어린이집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지원 및 지도를 하여야 한다.
법 제21조의2 (그 밖의 보육 관련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1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주 외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직장어린이집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정보 제공, 상담 및 비용의 일부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법 제 22조 (공공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근로자를 위한 교육·육아주택 등 공공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 1항에 따른 공공복지시설의 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자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http://www.lawnb.com/>

4.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은 고용촉진 시설 및 직장어린이집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설치비,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해당 법령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 등의 고용안정·고용촉진 및 사업주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 시설, 어린이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촉진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주가 단독이나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운영비용 중 일부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에 대해서는 지원의 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고용보험법 제19조2항 및 시행령 제12조(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에 근거하여 산업별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²⁾. 또한 어린이집을 단독이나 공동으로 설치하려는 사업주나 사업주 단체에

2)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근로자의 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취한 조치 및 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은 제조업의 경우 500명 이하, 이 밖의 산업은 업종별로 300명 이하, 200명 이하, 100명 이하로 명시하고 있음[부록 3 참조].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비용을 용자하거나 일부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와 장애아동 또는 영아를 위한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에 대하여는 용자나 지원의 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표 2-3〉 고용보험법 상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관련 조항 (2014.5.12.기준)

조항	본문
법 제26조 (고용촉진 시설에 대한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들의 고용안정·고용촉진 및 사업주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 시설, 어린이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촉진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령 제38조 (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p>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에 따라 고용촉진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 시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p> <p>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에 따라 사업주가 단독이나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운영비용 중 일부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수가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주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지원의 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다.</p> <p>⑤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에 따라 어린이집을 단독이나 공동으로 설치하려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비용을 용자하거나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와 장애아동 또는 영아를 위한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에 대하여는 용자나 지원의 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다.</p>
시행규칙 제59조 (직장어린이집의 지원)	<p>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단독으로 설치·운영하거나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영 제38조제4항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영 제38조제4항에 따라 교재·교구비의 일부와 보육교사, 직장어린이집의 원장과 취사부(이하 “보육교사등”이라 한다)에 대한 인건비(위탁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등에 대한 인건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일부를 지원한다. 다만, 교재·교구비에 대한 지원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수가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주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교육관련 재료비·소모품 지원에 한정하고, 직장어린이집의 원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보육하는 영유아의 수가 20명 이상인 경우에만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직장어린이집일 것 2.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직장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를 고용하고 있을 것 3.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소속의 피보험자의 자녀 수가 전체 보육아동 수의 3분의 1 이상이거나 4분의 1 이상이면서 피보험자(다른 사업장 소속 피보험자를 포함한다)의 자녀의 수가 2분의 1 이상일 것 <p>② 제1항에 따른 교재·교구비의 지원금액과 보육교사등에 대한 인건비의 지원 금액은 사업 규모, 보육 중인 영유아의 나이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고용</p>

	<p>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아닌 자의 자녀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비율(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지급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대표사업주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직장어린이집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전월분에 대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는 최초의 지원금 신청 시에만 첨부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직장어린이집 인가증 사본 2. 보육교사등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근로계약서 사본 3.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임을 증명하는 서류(공동시설인 경우에는 대표사업주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4. 보육교사등의 인건비 및 출근일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보육아동 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p>④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직장어린이집이 「영유아보육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교재·교구비와 보육교사등의 인건비에 대한 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비용 지원액이 이 조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지원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p>
--	---

자료: 「고용보험법」, <http://www.lawnb.com/>

5. 명단공표 제도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영유아보육법상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 명단공표를 하도록 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상의 법적 근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을 공표하기 위해서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의 사업장인 설치의무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 명칭, 주소, 상시 근로자 수, 상시 여성근로자 수, 보육대상 영유아수, 미이행 사유 등을 실태 조사 하도록 하고 있다.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며 조사기관의 장은 실태 조사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명단공표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명단 공표 제외사유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이 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설치 중인 경우’, ‘상시 근로자의 특성상 보육 수요가 없는 경우 등 명단 공표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로 명시하고 있다.

〈표 2-4〉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 제도 개요

주요사항	내 용
법적근거	영유아보육법 제14조의2(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등)('11.12.31)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의 4 ~ 제20조의5('12.6.29)
설치의무 사업장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
이행기준	①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② 위탁 보육 ③ 보육수당 지급
공표 제외사유	①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이 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②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설치 중인 경우 ③ 상시 근로자의 특성상 보육 수요가 없는 경우 등 명단 공표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공표기준	설치의무 사업장이 이행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공표 제외사유도 없는 경우
공표사항	사업장 명칭주소상시 근로자 수, 상시 여성근로자 수, 보육 대상 영유아 수 및 미이행 사유 등
공표방법	현행: 관보에 게재하거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6개월 이상 게시 향후: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하고, 2개 이상 일간지에 게재 (2015.1.1. 이후)
공표 심의위원회	보건복지부장관 임명(위촉) : 5인 이상 - 보건복지부에서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 사업주를 대표하는 사람 -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 그 밖에 보육전문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현행: 법률전문가 1인, 근로자 대표 1인, 사업주대표 1인, 공익대표 3인, 보육전문가 2인으로 구성됨(2014년 기준).
공표절차	①심의 ⇒ ② 공표대상 사업장에 사실 통보 ⇒ ③ 20일간 소명자료 제출 및 출석하여 의견진술 기회부여 ⇒ ④ 공표대상 사업장 재심의 ⇒ ⑤ 공표대상 사업장 최종확정 및 공표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4.4.29.), 영유아보육법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미이행 사업장 명단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9인의 직장어린이집 명단공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확정된다. 직장어린이집 명단공표 심의위원회는 보건복지부 1인, 근로자 대표 1인, 사업주 대표 1인, 법률전문가 1인, 공익대표 3인, 보육전문가 2인으로 구성된다. 직장어린이집 명단공표 심의위원회에서 실태 조사 결과를 1차 심의 후, 공표대상 사업장에 20일간 소명자료 제출 및 직장어린이집 명단공표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공표대상 사업장을 재 심의하여, 공표대상 사업장을 최종확정 하도록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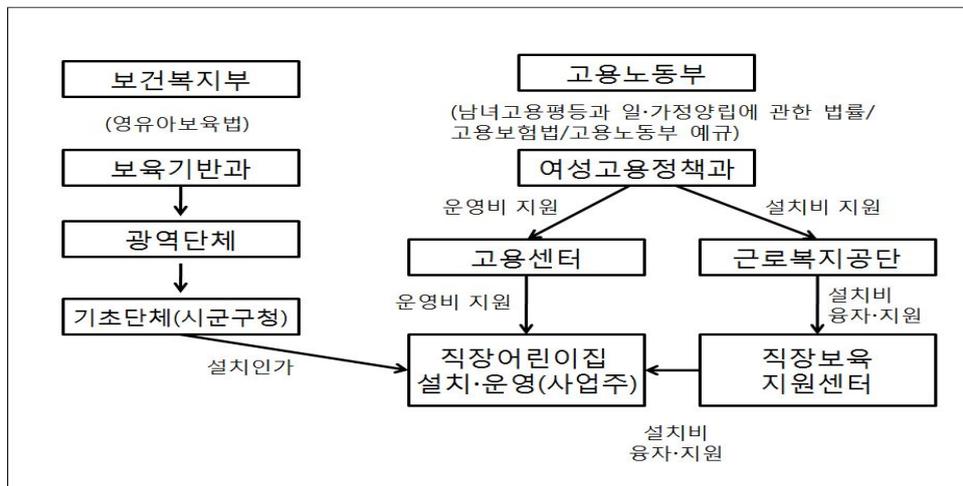
현행 공표방법은 관보에 게재하거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6개월 이상 게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2015년 1월 1일 이후 부터는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홈페이지 1년 이상 게시하고, 2개 이상 일간지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다.

제2절 직장어린이집 지원정책 현황

1. 직접지원 제도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위한 지원체계는 [그림 2-2] 와 같다. 직장어린이집을 지원하는 중앙부처는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시·군·구청의 기초자치단체를 통해 설치인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또한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연립별 기본보육료를 무상지원 하고 있다.

[그림 2-2] 직장어린이집 지원체계



자료: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escac.or.kr/>

직장어린이집의 설치비 및 운영비는 고용노동부를 통해 지원된다. 고용노동부 산하의 고용센터는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으며,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는 설치비용자·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에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관련된 컨설팅, 상담, 설치비용 지원 및 직장보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운영지원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정부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직접지원 정책은 <표 2-5>와 같다. 지원의 주체는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시·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설치비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고 운영비는 고용노동부와 복지부에서 각각 지원하고 있는 형태이다.

〈표 2-5〉 정부의 직장어린이집 지원정책(직접지원)

지원주체	구분	지원종류	내역	지원한도	비고
고용노동부	설치비	무상지원	시설비	3억원 (공동 6억원)	- 소요금액의 60~80% (우선지원대상기업, 영아·장애아시설 80%)
			산업단지형 공동직장 어린이집 설치비	15억원	- 소요금액의 90%
			유구비품비	5천만원	- 교체 시 3년단위로 3천만원
	운영비	무상지원	시설건립 시설매입 시설임차 시설 개·보수 시설전환	7억원	- 상환: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 이율: 대기업 2%, 우선지원기업 1% * 토지매입비는 용자대상에서 제외
			원장, 보육교사, 취사부 임금지원	1인당 월 80만원 (중소기업은 월 120만원)	- 원장은 매분기말일 기준 보육 현원이 20인 이상인 경우 지원 - 취사부는 매분기말일 기준 보육 현원과 관계없이 지원
			교재·교구비 지원	월 120만원~ 520만원	- 중소기업이 설치한 직장어린이집 대상 - 현원 20인 미만 : 월 120만원 - 현원 20~39인 이하 : 월 200만원 - 현원 40~59인 이하 : 월 280만원 - 현원 60~79인 이하 : 월 360만원 - 현원 80~99인 이하 : 월 440만원 - 현원 100인 이상 : 월 520만원 * 매월 말일 현원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보건복지부 (시·군·구)	운영비	무상지원	시간연장 보육 지원	-	-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시간연장어린이집 으로 지정받은 시설에 한함
			교재·교구비 지원	년 120만원	- 공공기관 또는 고용보험 기금에서 운영비를 지원 받는 시설은 제외
			기본보육료	-	- 만0세 394천원, 만1세 347천원, 만2세 286천원, 만3~5세 220천원

자료: 보건복지부(2014), 2014년도 보육사업안내, p9. 수정·보완함

고용노동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시 시설비, 어린이집 설치비, 유구비품비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시설비는 3억원(공동직장어린이집 6억원)의 한도에서 실제 소요금액의 60~80% 수준을 지원하고 있다.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설치비를 15억원의 한도에서 실제 소요금액의 9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구비품비는 설치 시 5천만원의 한도로 지원하고, 교체 시 3년 단위로 3천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 밖에 시설건립, 시설매입, 시설임차, 시설 개보수, 시설전환에 필요한 비

용은 7억원의 한도에서 용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와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가 원장, 보육교사, 취사부 임금, 교재·교구비를 지원 하고 있다. 원장, 보육교사, 취사부 임금은 1인당 월 80만원(중소기업은 월 12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원장은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보육현원이 20인 이상인 경우로 한한다. 취사부는 보육 현원과 관계없이 자원 받는다. 교재·교구비는 중소기업이 설치한 직장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현원 기준에 따라 월 120만원 ~ 월 520만원을 차등지원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및 시군구는 운영비 중 시간연장 보육지원과 교재·교구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시간연장 보육지원은 시간연장 보육교사 월 지급액의 80%를 지급하고, 주간 보육교사가 초과 근무 형태로 시간연장 보육을 하거나 단시간 보육교사를 채용한 경우 월 40만원을 지원한다. 교재교구비는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 년 50만원에서 120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2. 간접지원 제도

정부는 직접지원 외에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세금을 면제해주는 등 간접지원하고 있으며 정부의 직장어린이집 세제지원정책은 <표 2-6>과 같다.

직장어린이집 간접지원 정책으로 부동산 관련 세제지원,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개별소비세 면제, 어린이집 운영지원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조항이 있다. 부동산 관련 세제지원의 경우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운영을 목적으로 부동산(토지, 건축물) 취득 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를 면제해주고 있으며, 소득세 또는 법인세 지원의 경우 2015.12.31.일까지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신축, 증축, 개축 또는 구입하는 경우, 취득금액의 10% 공제해주고 있다. 이밖에 영사기 등 어린이집에서 보육용으로 구입하는 교육기자재 등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해주고 있으며 직장어린이집 운영비를 부동산 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별 총 수입 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는 등의 세제 지원을 하고 있다.

〈표 2-6〉 정부의 직장어린이집 지원정책(간접지원)

구분	지원 내용	비고
부동산관련 세제지원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운영을 목적으로 부동산(토지, 건축물) 취득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2015.12.31.일까지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신축, 증축, 개축 또는 구입하는 경우, 취득금액의 10%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제1항
개별소비세 면제	영사기 등 어린이집에서 보육용으로 구입하는 교육기자재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
어린이집 운영지원 필요경비 인정	직장어린이집 운영비를 부동산 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별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23호

자료: 보건복지부(2014), 2014년도 보육사업안내, p10.

제3절 직장어린이집 설치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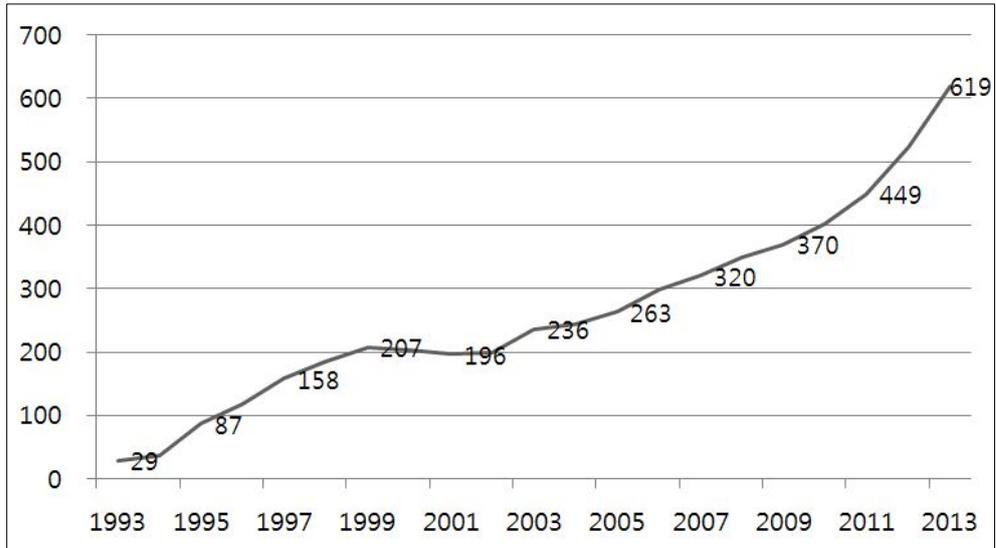
1. 직장어린이집 설치현황

직장어린이집은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장에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그림 2-3] 은 국내 직장어린이집의 연도별 설치·운영 현황을 제시하고 있다.

1993년에는 29개소에 불과했던 직장어린이집이 2013년 12월말 기준으로 619개소가 운영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1년 이후 직장어린이집 설치율이 다소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2011년 영유아보육법 제14조의2(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등) 조항이 신설되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 및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를 시작한 시점과 일치한다. 이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설치기준 완화,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지원 확대 등의 제도적 효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림 2-3] 직장어린이집 연도별 설치·운영 현황(1993-2013년)

(단위: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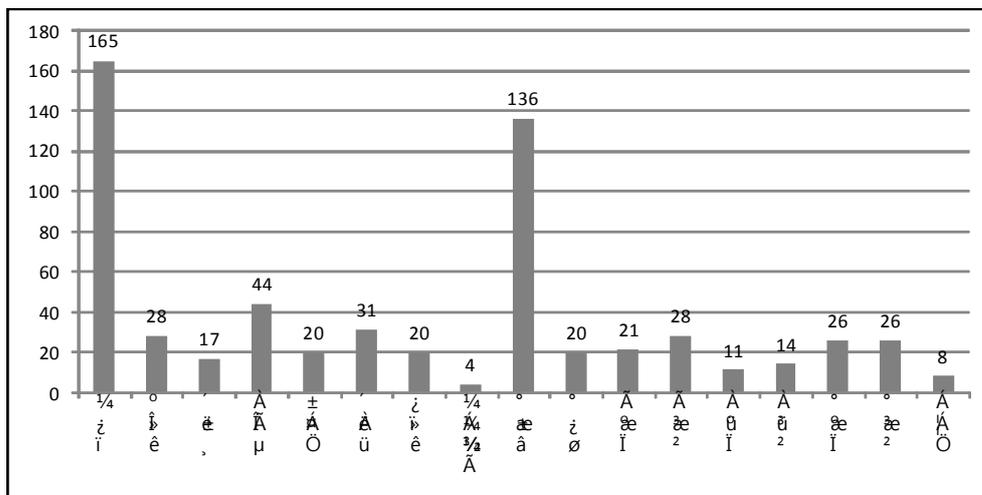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2013.

[그림 2-4] 는 2013년 말 기준으로 설치·운영 중인 시도별 직장어린이집 현황을 제시하고 있다. 서울이 165개소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기 136개소, 인천 44개소인 것으로 나타나 전체 직장어린이집의 절반 이상(55.7%)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세종시(4개소)와 제주(8개소)가 10개소 미만으로 가장 적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10~30개소 수준으로 직장어린이집이 설치·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림 2-4] 직장어린이집 시도별 설치·운영 현황(2013년)

(단위: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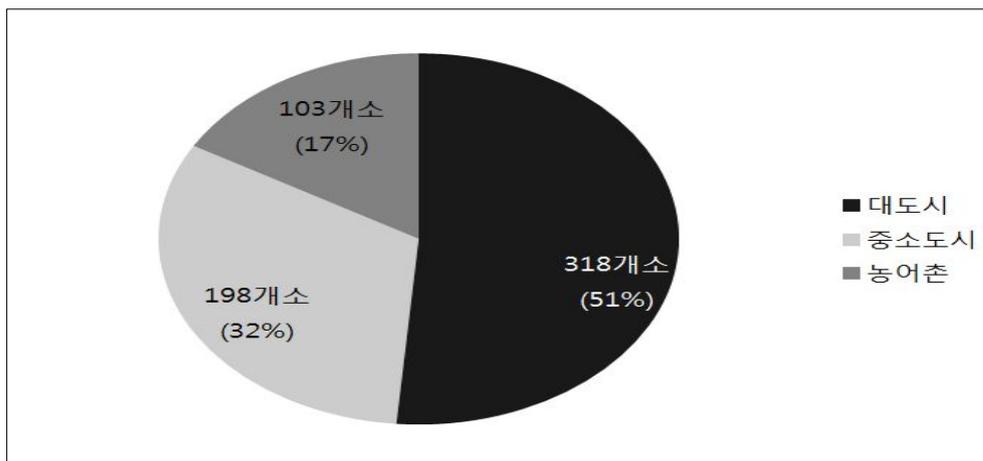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2013.

이어서 2013년 말 기준으로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 분류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을 살펴보겠다 [그림 2-5] .

[그림 2-5] 직장어린이집 지역유형별 설치·운영 현황(2013년)

(단위: 개소, %)



자료: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2013.

전체 직장어린이집 619개소 중에서 대도시에 설치된 개소수는 318개소(51%), 중소도시에 설치된 경우는 198개소(32%), 농어촌 지역에 설치된 경우는 103개소(17%)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 전체 보육시설 43,770개소의 36.2%(15,852개소)가 대도시에 설치되어 있는 상황과 비교하면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대도시 집중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대상사업장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도시 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 이행 현황

2013년 말 현재 전체 직장어린이집 619개소 중에서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이 설치한 직장어린이집은 534개소로 전체 직장어린이집의 86.2%에 해당한다. 다음의 <표 2-7>과 [그림 2-6]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의 연도별 이행현황을 나타낸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은 2006년 775개소에서 2011년 832개소 정도로 일정 수준의 증가를 유지하다가, 2012년 9월 919개소, 2013년 말 1,074개소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의 이행수단별 현황을 보면 직접설치는 2006년 199개소에서 2013년 534개소로 증가하였으며, 개소수의 증가뿐만 아니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이 직접설치를 통한 의무이행 비율도 25.7%에서 49.7%로 24.0%p 늘어난 것임을 알 수 있다. 특히, 2012년 9월에서 2013년 말 사이에 직접설치가 175개소나 증가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

보육수당을 지급한 사업장은 2006년 132개소에서 2013년 242개소로 증가하였고, 이행 비율로는 17.0%에서 22.5%로 5.5%p 늘어났으나 2012년 253개소를 기록한 이후 2013년 242개소로 감소하였다. 전계층 무상보육이 실시되고, 향후 보육수당 지급을 통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의 이행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도록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함에 따라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장의 감소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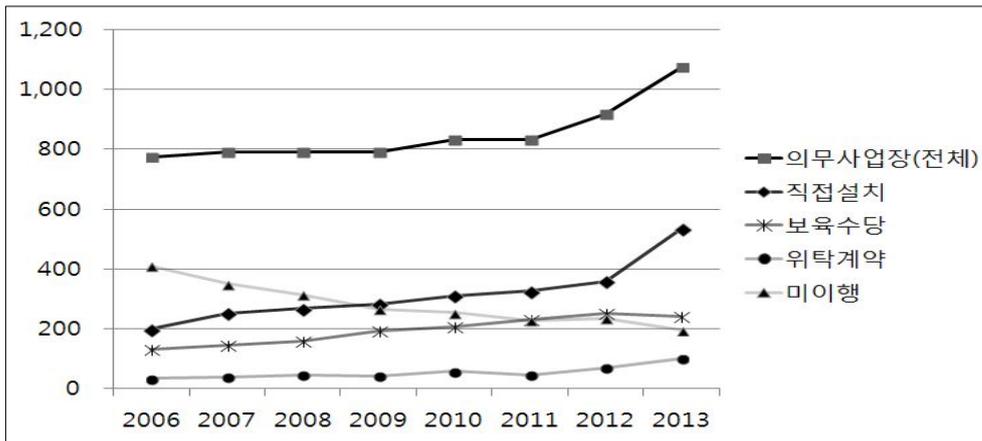
위탁보육을 실시한 사업장은 2006년 34개소에서 2011년 101개소로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직접설치와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장 수에 비해서는 여전히 위탁보육을 통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는 사업장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표 2-7〉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의 연도별 이행 현황(2006~2013년)
(단위: 개소)

연도	의무사업장 (A=B+C)	이행 (B)				미이행 (C)
		계	직접설치	보육수당	위탁보육	
2013.12.	1,074 (100.0)	877 (81.7)	534 (49.7)	242 (22.5)	101 (9.4)	197 (18.3)
2012.9.	919 (100.0)	683 (74.3)	359 (39.1)	253 (27.5)	71 (7.7)	236 (25.7)
2011.6.	832 (100.0)	604 (72.6)	326 (39.2)	231 (27.8)	47 (5.6)	228 (27.4)
2010.	833 (100.0)	578 (69.4)	312 (37.5)	208 (25.0)	58 (7.0)	255 (30.6)
2009.	790 (100.0)	523 (66.2)	284 (35.9)	195 (24.7)	44 (5.6)	267 (33.8)
2008.	791 (100.0)	476 (60.2)	269 (34.0)	160 (20.2)	47 (5.9)	315 (39.8)
2007.	791 (100.0)	440 (55.6)	253 (32.0)	147 (18.6)	40 (5.1)	351 (44.4)
2006.	775 (100.0)	365 (47.1)	199 (25.7)	132 (17.0)	34 (4.4)	410 (52.9)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3.1.30.),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4.4.29.)

[그림 2-6]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의 연도별 이행 현황(2006~2013년)
(단위: 개소)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3.1.30.),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4.4.29.)



제3장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 현황

제1절 조사개요

제2절 일반현황

3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대상 < 사업장 <

제1절 조사개요

1. 대상 사업장 선정

영유아보육법령상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다. 대상사업장 선정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과 고용보험 자료(2013년 9월 30일 기준)를 이용하여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을 기초 조사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였다. 고용보험 자료상 2013년 9월 말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 500명 이상 기업은 1,934개소이며, 여성피보험자수³⁾ 300명 이상 기업은 857개소이며, 상시근로자 수 500명 이상 또는 여성피보험자수 300명 이상 기업은 2,058개소로 조사되었다. 공무원과 같은 연금법 적용자 등은 고용보험 적용대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 자료 상 대상 사업장(학교, 국가기관, 지자체)은 700개소로 조사되었다. 이들 700개소 사업장 중 일부 사업장⁴⁾의 경우 고용보험 자료에 중복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업장은 96개소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용보험상 대상 사업장 2,058개소와 건강보험상 대상 사업장인 700개소 중에서 중복 등록된 96개소를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조사대상 사업장은 2,662개소로 확정되었다.

그러나 고용보험 자료의 특성상 사업장 단위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별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분산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1개의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분산된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통계를 제공하고 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기준으로 대상사업장이 된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교육지원청 근로자 수의 경우 산하 교육기관의 교직원도 포함될 수치이며, 경찰청 근로자 수의 경우 소속 지구대 인력이 포함되며, 도청의

3) 해당자료에는 여성상시근로자 수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여성피보험자 수로 대체함.

4) 사립학교, 일부 교육지원청, 일부 시청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따른 근로자 수에 의해 고용보험에도 등록됨.

경우 산하 주민자치센터 직원을 포함한 근로자 수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기업기관이 최종적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1차 우편조사에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여부뿐만 아니라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 여부도 함께 조사하였다.

대상사업장이 아니라고 회신할 경우 사업장 분산, 근무 인력 분산 등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업장별 근로자 현황,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지방소득세, 주민세, 근로자 파견허가증,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 등 해당서류를 공문과 함께 첨부하도록 하였다. 고용보험 상의 상시 근로자 수가 전체 기업기관 단위로 보고되어 과다 집계되어 있는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지방소득세, 주민세 영수증에는 단위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기입되어 있어 이를 통해 사업장 분산 및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대상인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증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근로자들이 외부 사업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거나 건설현장 등에서 용역업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파견허가증,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 고용보험 상의 상시 근로자 수가 동일사업장 근로자가 아님을 증명하도록 하였다. 고용보험 자료 추출날짜의 상시 근로자 수와 달리 조사시점에서는 사업장이 폐업하여 상시 근로자 수가 부족한 경우 폐업사실증명 서류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조사결과 사업장이 지점별로 분산된 경우, 청소 용역 업체로서 인력파견을 하는 경우, 경비 용역업체로 인력을 파견하는 경우와 같이 근로자들이 동일 사업장에 근무하지 않는 경우라고 판단되는 사례가 1,588개소로 나타났다. 최종적으로 이들 사업장을 제외한 1,074개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으로 확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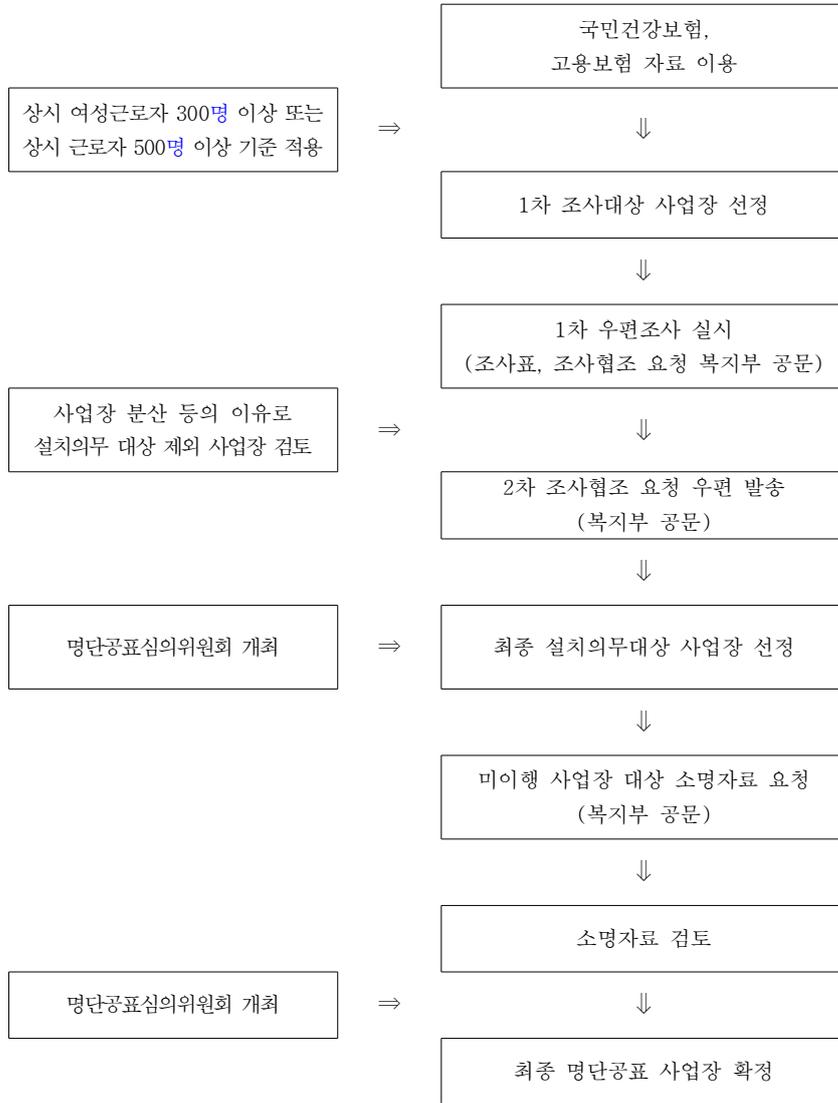
2. 본 조사 실시

1차 조사를 통해서 1,074개 사업장을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으로 최종 확정하였으며 이들 중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회신을 하지 않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2차, 3차 우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림 3-1] 은 실태조사 실시 절차를 도표로 나타낸 것이다. 1차 조사에서 설치의무 이행여부에 대해 미회신 하거나 회신자료가 미흡한 경우에는 2차로 조사협조 요청공문을 보내고 회신을 독려하였다. 2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미이행 사업장 현황을 파악하고 최종적으로 미이행 사업장

으로 판단된 사업장에 대해서 20일간의 소명기회를 제공하고 소명자료를 검토한 후 최종 명단공표 사업장을 확정하였다. 1차 조사시기부터 마지막 소명자료 회신기간동안 연구진 뿐만 아니라 6인의 전문 전화상담원이 상주하여 조사표에 대한 문의와 증빙자료 제출과 관련된 문의에 대한 안내를 하였으며, 미회신 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전화상담을 통해 조사표 및 관련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연구진이 실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일부 사업장의 경우 현장조사를 나가는 방법 등으로 누락되는 사업장이 없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2013년도 조사에서 명단공표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였으나 2014년도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업장은 34개소로 조사되었다. 이들에 대해서 누락되는 사업장이 생기지 않도록 재차 조사에 응하도록 하였으며, 끝까지 조사표를 회신하지 않은 경우 연구진이 현장을 방문하여 이행 여부를 판단하였다.

[그림 3-1]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 조사 및 명단공표 확정 절차



제2절 일반현황

1. 유형 및 규모별 현황

<표 3-1>은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규모별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 1,074개소 사업장 중 상시 근로자는 500명 미만이나 상시 여성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은 8개소로 조사되었으며, 500명 이상~600명 미만 규모의 사업장은 200개소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1,000명 이상~1,500명 미만 규모의 사업장은 203개소로 조사되었으며 1,500명 이상 규모의 사업장은 296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1,000명 이상 규모의 사업장은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의 46.5%(499개소)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전체 평균 근로자 수는 1,683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1>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별 현황

(단위: 개소, %, 명)

상시 근로자 수	사업장 수	비율 (%)
전체	1,074	100.0
500명 미만 (여성 300인 이상)	8	0.7
500명 이상 ~ 600명 미만	200	18.6
600명 이상 ~ 700명 미만	127	11.8
700명 이상 ~ 800명 미만	89	8.3
800명 이상 ~ 900명 미만	68	6.3
900명 이상 ~ 1,000명 미만	83	7.7
1,000명 이상 ~ 1,500명 미만	203	18.9
1,500명 이상	296	27.6
평균 (명)	1,683	

상시 여성근로자 수에 따라 분류해 보면, 전체 1,074개소 사업장 중 상시 여성근로자 수가 100명 미만인 사업장은 197개소이며, 300명 이상~400명 미만 규모의 사업장은 117개소로 조사되었다. 상시 여성근로자가 1,000명 이상인 사업장도 106개소로 전체 대상 사업장의 약 1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

중에서 상시 여성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은 525개소(48.8%)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상시 여성근로자 수는 484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2>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의 상시 여성근로자 수별 현황

(단위: 개소, %, 명)

상시 여성근로자 수	사업장 수	비율 (%)
전체	1,074	100.0
100명 미만	197	18.3
100명 이상 ~ 200명 미만	195	18.2
200명 이상 ~ 300명 미만	157	14.6
300명 이상 ~ 400명 미만	117	10.9
400명 이상 ~ 500명 미만	103	9.6
500명 이상 ~ 1,000명 미만	199	18.5
1,000명 이상	106	9.9
평균 (명)	484	

상시 근로자의 연령대별 분포를 보면, 10대의 경우 대부분의 기업이 100명 미만을 고용하고 있으나 1개 기업의 경우 50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개 해당 기업은 충남지역의 공단 내에 있는 제조업 기업으로 전체 근로자 수는 2,115명이며, 10대 근로자 비율은 34.8%인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의 경우 100명 미만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 44%에 달했으며 30대의 경우 300명 이상을 고용하는 경우가 516개 사업장으로 전체 사업장의 48%가 30대를 30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0대의 경우 또한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446개소로 전체 사업장 중 약 42%가 40대를 30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50대 이상의 근로자를 30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245개소로 조사되었으며, 이들 중 134개소 사업장은 50대 이상의 근로자를 50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

<표 3-3>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연령대별 현황

(단위: 개소, %)

상시근로자 연령대별 수	사업장 수 (%)						
	전체	100명 미만	100명 이상 -200명 미만	200명 이상 -300명 미만	300명 이상 -400명 미만	400명 이상 -500명 미만	500명 이상
10대	1,074 (100.0)	1,055 (98.2)	9 (0.8)	6 (0.6)	1 (0.1)	2 (0.2)	1 (0.1)
20대	1,074 (100.0)	474 (44.1)	230 (21.4)	114 (10.6)	66 (6.1)	51 (4.7)	139 (12.9)
30대	1,074 (100.0)	143 (13.3)	201 (18.7)	214 (19.9)	140 (13.0)	103 (9.6)	273 (25.4)
40대	1,074 (100.0)	191 (17.8)	212 (19.7)	225 (20.9)	149 (13.9)	76 (7.1)	221 (20.6)
50대 이상	1,074 (100.0)	438 (40.8)	255 (23.7)	136 (12.7)	62 (5.8)	49 (4.6)	134 (12.5)

<표 3-4>는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별의 보육수요 현황에 따른 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표 3-4>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의 보육수요 규모별 현황

(단위: 개소, %, 명)

보육수요	사업장 수	비율 (%)
전체	1,074	100.0
100명 미만	222	20.7
100명 이상 ~ 200명 미만	271	25.2
200명 이상 ~ 300명 미만	164	15.3
300명 이상 ~ 400명 미만	99	9.2
400명 이상 ~ 500명 미만	49	4.6
500명 이상 ~ 1,000명 미만	89	8.3
1,000명 이상	59	5.5
무응답	121	11.3
평균 (명)	370	

보육수요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취학 전 아동수를 연령별로 조사하였다. 전체 1,074개소 사업장 중 121개소는 해당 문항에 대해 응답을 하지 않았으며 이를 제외한 953개소 사업장이 응답하였다. 222개소 사업장이 보육수요가 100명 미만이라고 응

답하였으며 100명 이상~200명 미만이라고 응답한 사업장은 271개소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사업장 중 보육수요가 100명 이상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731개소로 대부분의 사업장이 상당한 보육수요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본 조사에서 사용된 보육수요는 보육대상연령(미취학) 아동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조사된 보육수요가 실질적으로 해당 기업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예상되는 이용자 수로 보기에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재적 이용가능자의 수를 가늠해 볼 수 있으며, 해당 기업에서 제공하는 보육서비스의 질이 상대적으로 우수하다고 판단될 경우 많은 근로자의 자녀들이 이용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본다.

2. 지역별 현황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된 1,074 업체의 시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표 3-5>와 같다. 대상사업장은 크게 국가기관, 지자체, 학교, 기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국가기관, 지자체, 국공립학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공무원들이 대부분이라 건강보험 측의 협조를 얻어 조사대상 사업장을 선정하였다. 조사대상 국가기관에는 법원, 검찰청, 경찰청, 구치소, 중앙부처 등이 해당되며, 지자체에는 시·도청, 시·군·구청, 교육지원청이 포함된다. 학교의 경우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로 구분되는데 국공립학교는 건강보험, 사립학교는 고용보험을 기준으로 조사대상 사업장을 선정하였다. 조사대상 학교는 모두 대학교였으며, 상시 근로자 수에는 조교, 시간강사 등도 포함된다.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규모의 초·중·고등학교는 없었으며, 초·중·고등학교 교직원들은 고용보험 상에서 교육지원청 상시 근로자 수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다수였다. 기업의 근로자 현황은 고용보험공단 측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이용하였다.

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대상 업체 중 714개 사업장(66.4%)이 기업에 해당되었으며 155개 사업장(14.4%)이 지자체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0개 사업장(10.2%)은 국가기관, 95개 사업장(8.8%)은 학교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의 대부분은 일반기업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자체와 국가기관도 23%에 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5>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의 시도 및 사업장 유형별 현황

(단위: 개소, %)

시도	계	국가기관	지자체	학교	기업
전체	1,074 (100.0)	110 (100.0)	155 (100.0)	95 (100.0)	714 (100.0)
서울	363 (33.8)	32 (29.1)	22 (14.2)	28 (29.5)	281 (39.4)
부산	64 (6.0)	8 (7.3)	8 (5.2)	11 (11.6)	37 (5.2)
대구	35 (3.3)	7 (6.4)	8 (5.2)	2 (2.1)	18 (2.5)
인천	40 (3.7)	5 (4.5)	10 (6.5)	2 (2.1)	23 (3.2)
광주	21 (2.0)	5 (4.5)	5 (3.2)	3 (3.2)	8 (1.1)
대전	48 (4.5)	6 (5.5)	6 (3.9)	5 (5.3)	31 (4.3)
울산	33 (3.1)	1 (0.9)	6 (3.9)	2 (2.1)	24 (3.4)
경기	154 (14.3)	15 (13.6)	26 (16.8)	8 (8.4)	105 (14.7)
강원	36 (3.4)	7 (6.4)	11 (7.1)	5 (5.3)	13 (1.8)
충북	36 (3.4)	6 (5.5)	6 (3.9)	5 (5.3)	19 (2.7)
충남	41 (3.8)	3 (2.7)	8 (5.2)	4 (4.2)	26 (3.6)
전북	30 (2.8)	2 (1.8)	8 (5.2)	6 (6.3)	14 (2.0)
전남	27 (2.5)	2 (1.8)	8 (5.2)	2 (2.1)	15 (2.1)
경북	56 (5.2)	1 (0.9)	10 (6.5)	7 (7.4)	38 (5.3)
경남	65 (6.1)	4 (3.6)	11 (7.1)	4 (4.2)	46 (6.4)
제주	8 (0.7)	-	1 (0.6)	1 (1.1)	6 (0.8)
세종	17 (1.6)	6 (5.5)	1 (0.6)	-	10 (1.4)

이들의 지역별 현황을 보면 전체 1,074개의 대상 사업장 중 517개소(48.1%)가 서울(363개소)과 경기(154개소)에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밖에 경남(65개소), 부산(64개소), 경북(56개소) 순으로 조사되었다. 국가기관도 110개소 중 상당

수가 서울(32개소, 29.1%)과 경기(15개소, 13.6%)에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의 경우 경기도에 26개소가 분포되어 있어 서울시 22개소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도의 경우 28개의 시로 이루어지는 등, 행정구역이 서울시의 행정구역보다 더 많은 상황이기애 이러한 특징이 반영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별로 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세종시의 경우 이전된 국가기관 등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국가기관 비율(35.2%)이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강원도의 경우 지자체 비율(30.5%)이 높은 지역으로 조사되었다.



제4장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현황

제1절 일반 현황

제2절 직접설치 사업장 현황

제3절 보육수당 지급 사업장 현황

제4절 위탁보육 사업장 현황

4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현황 <



제1절 일반 현황

영유아보육법 상 직장어린이집을 사업주가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보육 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은 직장어린이집을 직접설치 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보육을 지원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3가지 방법이 가능하다⁵⁾.

1. 유형별 의무이행 현황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의 유형별 의무이행 현황을 살펴보면 <표 4-1>과 같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 1,074개소 중에서 877개소(81.7%)가 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며 197개소(18.3%)가 미이행 사업장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의무이행 사업장 877개소 중 직접설치가 534개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 이행하는 사업장이 242개소, 위탁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이 101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 1,074개소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 중 714개소(66.5%)가 공사등을 포함한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자체가 155개소(14.4%), 국가기관이 110개소(10.2%)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각 유형별 의무이행 비율을 살펴보면, 지자체의 98.1%가 이행 중이며, 국가기관의 90.9%가 이행 중인 반면 학교와 공사등을 포함한 기업의 이행률은 각각 76.8%, 77.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가기관 110개소 중 직접 설치한 경우가 83개소(75.5%), 위탁보육을 실시한 사업장이 10개소(9.1%), 보육수당을 지급한 사업장이 7개소(6.4%)인 것으로 나타나 직접

5) 현행 영유아보육법상 위탁비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보육수당의 경우 연령별 정부보육료 지원 단가의 100분의 50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설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자체의 경우 155개소 중 78개소(50.3%)는 직접설치, 70개소(45.2%)는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위탁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는 4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자체의 경우 국가기관과 비교했을 때 보육수당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직접설치 비율이 국가기관 보다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직접설치에 따른 예산확보에 있어서 지자체보다 국가기관의 경우 좀 더 용이한 상황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학교는 95개소 대상 사업장 중 33개소(34.7%)가 직접 설치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33개소(34.7%)가 보육수당 지급, 7개소(7.4%)가 위탁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업의 경우 714개소 중 340개소(47.6%)가 직접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사업장이 132개소(18.5%), 위탁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은 80개소(11.2%)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교와 일반기업의 경우 직접설치 비율이 50%에 못 미치는 상황으로 장기적으로 직장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하여 직접설치를 위한 지원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표 4-1〉 사업장 유형별 의무 이행 현황

(단위 : 개소, %)

구분	의무사업장 (A=B+C)	이행 (B)				미이행 (C)
		계	직접 설치	보육 수당	위탁 보육	
합계	1,074 (100.0)	877 (81.7)	534 (49.7)	242 (22.5)	101 (9.4)	197 (18.3)
국가기관	110 (10.2)	100 (90.9)	83 (75.5)	7 (6.4)	10 (9.1)	10 (9.1)
지자체	155 (14.4)	152 (98.1)	78 (50.3)	70 (45.2)	4 (2.6)	3 (1.9)
학교	95 (8.9)	73 (76.8)	33 (34.7)	33 (34.7)	7 (7.4)	22 (23.2)
기업 (공사 등 포함)	714 (66.5)	552 (77.3)	340 (47.6)	132 (18.5)	80 (11.2)	162 (22.7)

앞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지자체는 이행률이 98.1%로 매우 높은 반면, 학교와 기업은 이행률이 77% 정도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와 국가기관에 비해 이행률이 낮은 학교와 기업들 중에서 국·공립대학교나 공직유관단체와 같이 공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행률은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표4-2>는 학교를 국공립대와 사립대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대상 학교는 사립대 65개소로 국·공립대학교 30개소의 2배 이상이나 사립대와 국·공립대학교 간의 이행률은 77% 정도로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직접설치 이행률은 사립대가 국공립대학교 보다 11.8%p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2> 대학교 유형별 의무 이행 현황

(단위 : 개소, %)

구분	의무사업장 (A=B+C)	이행 (B)				미이행 (C)
		계	직접 설치	보육 수당	위탁 보육	
계	95 (100.0)	73 (76.8)	33 (34.7)	33 (34.7)	7 (7.4)	22 (23.2)
국·공립대	30 (31.6)	23 (76.7)	8 (26.7)	12 (40.0)	3 (10.0)	7 (23.3)
사립대	65 (68.4)	50 (76.9)	25 (38.5)	21 (32.3)	4 (6.2)	15 (23.1)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대상 기업을 공사 등 공직유관단체와 민간기업으로 나눠서 설치의무 이행 현황을 살펴보면 <표4-3>과 같다.

<표 4-3> 기업 유형별 의무 이행 현황

(단위 : 개소, %)

구분	의무사업장 (A=B+C)	이행 (B)				미이행 (C)
		계	직접 설치	보육 수당	위탁 보육	
계	714 (100.0)	552 (77.3)	340 (47.6)	132 (18.5)	80 (11.2)	162 (22.7)
공사 등 공직유관단체	81 (11.1)	74 (91.4)	53 (65.4)	10 (12.3)	11 (13.6)	7 (8.6)
민간기업	633 (88.9)	478 (75.5)	287 (45.3)	122 (19.3)	69 (10.9)	155 (24.5)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대상 기업은 총 714개소인데, 이 중에서 민간기업이 633개소(88.9%), 공사 등 공직유관단체 81개소(11.1%)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사 등 공직유관단체는 91.4%가 설치의무 이행 사업장인데 비해 민간기업은 75.5%만이 설치의무 이행 사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설치의무 대상 민간기업 4곳 중 1곳이 미이행 사업장임을 시사하고 있다.

2. 사업장 규모별 의무이행 현황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의 사업장 규모별 의무 이행 현황은 <표 4-4>와 같다.

<표 4-4> 사업장 규모별 (상시 근로자 수) 의무 이행 현황

(단위: 개소, %, 명)

구분	의무사업장 (A=B+C)	이행 (B)				미이행 (C)
		계	직접 설치	보육 수당	위탁 보육	
전체	1,074 (100.0)	877 (81.7)	534 (49.7)	242 (22.5)	101 (9.4)	197 (18.3)
500명 미만	8 (100.0)	8 (100.0)	5 (62.5)	2 (25.0)	1 (12.5)	-
500명 이상 ~ 600명 미만	200 (100.0)	139 (69.5)	72 (36.0)	54 (27.0)	13 (6.5)	61 (30.5)
600명 이상 ~ 700명 미만	127 (100.0)	93 (73.2)	44 (34.6)	33 (26.0)	16 (12.6)	34 (26.8)
700명 이상 ~ 800명 미만	89 (100.0)	65 (73.0)	33 (37.1)	18 (20.2)	14 (15.7)	24 (27.0)
800명 이상 ~ 900명 미만	68 (100.0)	55 (80.9)	31 (45.6)	19 (27.9)	5 (7.4)	13 (19.1)
900명 이상 ~ 1,000명 미만	83 (100.0)	65 (78.3)	41 (49.4)	18 (21.7)	6 (7.2)	18 (21.7)
1,000명 이상 ~ 1,500명 미만	203 (100.0)	178 (87.7)	108 (53.2)	46 (22.7)	24 (11.8)	25 (12.3)
1,500명 이상	296 (100.0)	274 (92.6)	213 (72.0)	101 (34.1)	49 (16.6)	22 (7.4)
평균 (명)	1,684	1,839	2,267	1,172	1,174	992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 1,074개소의 평균 상시 근로자 수는 1,684명이며, 상시 근로자 수가 1,500명 이상인 사업장은 296개소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업장 규모별로 이행률을 살펴보면, 500명 미만 규모 사업장의 경우 해당 사업장 8개소가 모두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기업 모두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 기업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성근로자가 많아 이행률이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500명 미만 사업장 그룹을 제외하고 볼 때 전반적으로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설치의무 이행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행률은 500명 이상 ~ 600명 미만인 경우 69.5%인 반면 1,500명 이상인 경우 92.6%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행수단을 살펴보면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직접설치의 경우 이행률과 마찬가지로 500명 미만 기업 (62.5%)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직접설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직접설치 비율은 500명 이상 ~ 600명 미만인 경우 36.0%인 반면 1,500명 이상인 경우 92.6%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상시 여성근로자 수에 따른 이행 현황은 <표 4-5>에 제시되어 있다.

<표 4-5> 사업장 규모별 (상시 여성근로자 수) 의무 이행 현황

(단위: 개소, %, 명)

상시 여성근로자 수	의무사업장 (A=B+C)	이행 (B)				미이행 (C)
		계	직접 설치	보육 수당	위탁 보육	
전체	1,074 (100.0%)	877 (81.7%)	534 (49.7%)	242 (22.5%)	101 (9.4)	197 (18.3)
100명 미만	197 (100.0%)	144 (73.1%)	77 (39.1%)	43 (21.8%)	24 (12.2)	53 (26.9)
100명 이상 ~ 200명 미만	195 (100.0%)	163 (83.6%)	104 (53.3%)	50 (25.6%)	9 (4.6)	32 (16.4)
200명 이상 ~ 300명 미만	157 (100.0%)	128 (81.5%)	71 (45.2%)	44 (28.0%)	13 (8.3)	29 (18.5)
300명 이상 ~ 400명 미만	117 (100.0%)	90 (76.9%)	49 (41.9%)	30 (25.6%)	11 (9.4)	27 (23.1)
400명 이상 ~ 500명 미만	103 (100.0%)	81 (78.6%)	52 (50.5%)	23 (22.3%)	6 (5.8)	22 (21.4)
500명 이상 ~ 1,000명 미만	199 (100.0%)	170 (85.4%)	111 (55.8%)	33 (16.6%)	26 (13.1)	29 (14.6%)
1,000명 이상	106 (100.0%)	101 (95.3%)	70 (66.0%)	19 (17.9%)	12 (11.3)	5 (4.7)
평균 (명)	484	521	591	397	447	318

상시 여성근로자 수는 평균 484명이며, 300명 미만 사업장은 549개소(51.1%), 1,000명 이상인 기업은 106개소(9.8%)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별로 이행률을 살펴보면, 예외적으로 100명~300명 미만 규모의 사업장의 경우 300명 이상~500명 미만 사업장보다 이행률이 높게 조사되었지만, 그 밖의 경우를 보면 전반적으로 여성근로자가 많은 사업장의 경우 이행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상시 여성근로자가 1,000명 이상인 기업의 경우 95.3%가 이행하고 있으며 직접 설치 비율도 66%인 것으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의 보육수요에 따른 이행 현황은 <표 4-6>과 같다.

<표 4-6> 보육수요별 의무 이행 현황

(단위 : 개소, %, 명)

구분	의무사업장 (A=B+C)	이행 (B)				미이행 (C)
		계	직접 설치	보육 수당	위탁 보육	
계	1,074 (100.0)	877 (81.7)	534 (49.7)	242 (22.5)	101 (9.4)	197 (18.3)
100명 미만	222 (100.0)	171 (77.0)	107 (48.2)	47 (21.2)	17 (7.7)	51 (23.0)
100명 ~ 199명	271 (100.0)	203 (74.9)	100 (36.9)	74 (27.3)	29 (10.7)	68 (25.1)
200명 ~ 299명	164 (100.0)	136 (82.9)	78 (47.6)	44 (26.8)	14 (8.5)	28 (17.1)
300명 ~ 399명	99 (100.0)	87 (87.9)	43 (43.4)	27 (27.3)	17 (17.2)	12 (12.1)
400명 ~ 499명	49 (100.0)	45 (91.8)	29 (59.2)	13 (26.5)	3 (6.1)	4 (8.2)
500명 ~ 1,000명	89 (100.0)	80 (89.9)	56 (62.9)	17 (19.1)	7 (7.9)	9 (10.1)
1,000명 이상	59 (100.0)	56 (94.9)	48 (81.4)	6 (10.2)	2 (3.4)	3 (5.1)
무응답	121 (100.0)	99 (81.8)	73 (60.3)	14 (11.6)	12 (9.9)	22 (18.2)
평균 (명)	370	410	502	305	264	205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 1,074개소의 평균 보육수요는 370명이었으며 직접 설치한 경우의 평균 보육수요는 502명으로 보육수당 지급 사업장(305명), 위탁 보육실시 사업장(264명)의 평균 보육수요 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육수요 규모에 따른 이행률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보육수요가 많을수록 의무이행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에 따른 직접설치 비율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육수요가 100명 미만이라고 응답한 사업장의 경우 77%가 의무이행을 하고 있었으며 48%가 직접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중인 것으로 응답한 반면, 보육수요가 1,000명이상이라고 응답한 사업장의 경우 95%가 의무이행을 하고 있었으며 직접설치비율은 81.4%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상시 근로자 연령대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현황은 <표 4-7>과 같다.

<표 4-7> 상시 근로자 연령대별 의무 이행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의무사업장 (A=B+C)	이행 (B)				미이행 (C)	
		계	직접 설치	보육 수당	위탁 보육		
전체	1,074	877	534	242	101	197	
10대	100명 미만	1,055	860	517	242	101	195
	100 ~ 199명	9	7	7	-	-	2
	200 ~ 299명	6	6	6	-	-	-
	300 ~ 399명	1	1	1	-	-	-
	400 ~ 499명	2	2	2	-	-	-
	500명 이상	1	1	1	-	-	-
20대	100명 미만	474	393	223	138	32	81
	100 ~ 199명	230	171	103	45	23	59
	200 ~ 299명	114	88	52	25	11	26
	300 ~ 399명	66	54	32	13	9	12
	400 ~ 499명	51	44	28	4	12	7
	500명 이상	139	127	96	17	14	12
30대	100명 미만	143	119	75	34	10	24
	100 ~ 199명	201	150	62	66	22	51
	200 ~ 299명	214	167	95	54	18	47
	300 ~ 399명	140	106	69	25	12	34
	400 ~ 499명	103	82	45	22	15	21
	500명 이상	273	253	188	41	24	20
40대	100명 미만	191	145	100	33	12	46
	100 ~ 199명	212	141	66	47	28	71
	200 ~ 299명	225	190	86	77	27	35
	300 ~ 399명	149	125	82	31	12	24
	400 ~ 499명	76	70	40	21	9	6
	500명 이상	221	206	160	33	13	15
50대	100명 미만	438	336	199	93	44	102
	100 ~ 199명	255	204	121	56	27	51
	200 ~ 299명	136	119	59	41	19	17
	300 ~ 399명	62	54	28	18	8	8
	400 ~ 499명	49	44	30	13	1	5
	500명 이상	134	120	97	21	2	14

10대 상시 근로자 수는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 1,074개소 중에서 1,055개소가 100명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들 중 860개소가 설치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상시 근로자의 경우 474개소 (44.1%)의 사업장이 100명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393개소가 설치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0대 상시 근로자 수는 500명 이상인 경우가 273개소로 가장 많았고, 그 중에서 253개소가 설치의무를 이행하였고, 설치의무 이행 사업장 중 188개소가 직장어린이집을 직접설치 하였다. 40대 상시 근로자의 경우 200~299명을 고용한 사업장이 225개소로 가장 많았고, 이 중 190개소가 설치의무를 이행하고 있었다. 50대 이상 상시 근로자의 경우 438개소 사업장이 100명 미만을 고용하고 있었으며 이들 중 336개소만 설치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지역별 의무이행 현황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의 시도별 이행 현황을 살펴보면 <표 4-8>과 같다.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은 서울시가 363개소로 가장 많았는데, 이 중에서 82.4%(299개소)가 설치의무를 이행하였으며, 경기도의 154개소 사업장 중 123개소 (79.9%)가 설치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국적으로 이행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광주시로 해당기업 27개 사업장 중 20개(95.2%)사업장이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행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경남으로 해당기업 65개 사업장 중 46개소 (70.8%)가 설치의무를 이행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적으로 이행유형을 살펴보면, 인천시, 대전시, 제주도, 세종시의 경우 직접설치 비율이 60%를 상회하는 지역으로 조사되었으며, 대구시, 경북 지역의 경우 직접설치 비율이 각각 34.3%, 32.1%로 상대적으로 타 지역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8〉 지역별 의무 이행 현황

(단위 : 개소, %)

구분	의무사업장 (A=B+C)	이행 (B)				미이행 (C)
		계	직접 설치	보육 수당	위탁 보육	
계	1,074 (100.0)	877 (81.7)	534 (49.7)	242 (22.5)	101 (9.4)	197 (18.3)
서울	363 (100.0)	299 (82.4)	208 (57.3)	66 (18.2)	25 (6.9)	64 (17.6)
부산	64 (100.0)	51 (79.7)	25 (39.1)	15 (23.4)	11 (17.2)	13 (20.3)
대구	35 (100.0)	26 (74.3)	12 (34.3)	7 (20.0)	7 (20.0)	9 (25.7)
인천	40 (100.0)	31 (77.5)	24 (60.0)	6 (15.0)	1 (2.5)	9 (22.5)
광주	21 (100.0)	20 (95.2)	10 (47.6)	9 (42.9)	1 (4.8)	1 (4.8)
대전	48 (100.0)	45 (93.8)	30 (62.5)	8 (16.7)	7 (14.6)	3 (6.3)
울산	33 (100.0)	26 (78.8)	13 (39.4)	12 (36.4)	1 (3.0)	7 (21.2)
경기	154 (100.0)	123 (79.9)	80 (51.9)	22 (14.3)	21 (13.6)	31 (20.1)
강원	36 (100.0)	30 (83.3)	13 (36.1)	14 (38.9)	3 (8.3)	6 (16.7)
충북	36 (100.0)	29 (80.6)	16 (44.4)	10 (27.8)	3 (8.3)	7 (19.4)
충남	41 (100.0)	36 (87.8)	18 (43.9)	11 (26.8)	7 (17.1)	5 (12.2)
전북	30 (100.0)	27 (90.0)	11 (36.7)	14 (46.7)	2 (6.7)	3 (10.0)
전남	27 (100.0)	22 (81.5)	11 (40.7)	9 (33.3)	2 (7.4)	5 (18.5)
경북	56 (100.0)	44 (78.6)	18 (32.1)	19 (33.9)	7 (12.5)	12 (21.4)
경남	65 (100.0)	46 (70.8)	29 (44.6)	15 (23.1)	2 (3.1)	19 (29.2)
제주	8 (100.0)	7 (87.5)	5 (62.5)	2 (25.0)	-	1 (12.5)
세종	17 (100.0)	15 (88.2)	11 (64.7)	3 (17.6)	1 (5.9)	72 (11.8)

제2절 직접설치 사업장 현황

1. 일반 현황

전술한 바와 같이 전체 대상사업장 1,074개 사업장 중 877개 사업장이 설치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며, 이들 중 직장어린이집을 직접설치 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은 총 534개소로 조사되었다.

이들 534개소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에 따른 현황을 살펴보면 <표 4-9>와 같다.

<표 4-9> 직장어린이집 직접설치 사업장의 규모별 (상시 근로자 수) 현황

(단위: 개소, %, 명)

상시 근로자 수	계	국가	지자체	학교	기업
전체	534 (100.0)	83 (100.0)	78 (100.0)	33 (100.0)	340 (100.0)
500명 미만	5 (0.9)	-	3 (3.8)	-	2 (0.6)
500명 이상 ~ 600명 미만	72 (13.5)	12 (14.5)	9 (11.5)	5 (15.2)	46 (13.5)
600명 이상 ~ 700명 미만	44 (8.2)	8 (9.6)	2 (2.6)	1 (3.0)	33 (9.7)
700명 이상 ~ 800명 미만	33 (6.2)	4 (4.8)	4 (5.1)	1 (3.0)	24 (7.1)
800명 이상 ~ 900명 미만	31 (5.8)	7 (8.4)	3 (3.8)	4 (12.1)	17 (5.0)
900명 이상 ~ 1,000명 미만	41 (7.7)	15 (18.1)	7 (9.0)	1 (3.0)	18 (5.3)
1,000명 이상 ~ 1,500명 미만	108 (20.2)	18 (21.7)	29 (37.2)	8 (24.2)	53 (15.6)
1,500명 이상	200 (37.5)	19 (22.9)	21 (26.9)	13 (39.4)	147 (43.2)
평균 (명)	2,267	1,463	1,379	1,369	2,753

직장어린이집 직접설치 사업장의 평균 상시 근로자 수는 2,267명이며 직접설치 사업장의 57.7%가 상시 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장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가기관의 경우 상시 근로자 1,000명 이상인 경우가 44.7%이며, 지자체, 학교, 기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1,000명 이상 비중이 60% 내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업장 유형별 평균 상시 근로자 수를 보면 기업이 2,753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가기관(1,463명), 지자체(1,379명), 학교(1,369)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기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장을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직장어린이집 직접설치 사업장의 상시 여성근로자 수에 따른 현황을 살펴보면 <표 4-10>과 같다.

<표 4-10> 직장어린이집 직접설치 사업장의 규모별 (상시 여성 근로자 수) 현황

(단위: 개소, %, 명)

상시 여성근로자 수	계	국가	지자체	학교	기업
전체	534 (100.0)	83 (100.0)	78 (100.0)	33 (100.0)	340 (100.0)
100명 미만	77 (14.4)	25 (30.1)	9 (11.5)	1 (3.0)	42 (12.4)
100명 이상 ~ 200명 미만	104 (19.5)	23 (27.7)	2 (2.6)	4 (12.1)	75 (22.1)
200명 이상 ~ 300명 미만	71 (13.3)	11 (13.3)	10 (12.8)	7 (21.2)	43 (12.6)
300명 이상 ~ 400명 미만	49 (9.2)	5 (6.0)	10 (12.8)	3 (9.1)	31 (9.1)
400명 이상 ~ 500명 미만	52 (9.7)	5 (6.0)	13 (16.7)	3 (9.1)	31 (9.1)
500명 이상 ~ 1,000명 미만	111 (20.8)	9 (10.8)	27 (34.6)	13 (39.4)	62 (18.2)
1,000명 이상	70 (13.1)	5 (6.0)	7 (9.0)	2 (6.1)	56 (16.5)
평균 (명)	591	307	510	498	688

직장어린이집 직접설치 사업장의 평균 상시 여성근로자 수는 591명이며, 직장어린이집 직접설치 사업장의 52.8%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100명 미만 사업장도 14.4%에 달했으며 100명 이상 ~ 200명 미만인 사업장은 19.5%로 조사되었다.

사업장 유형별 평균 상시 여성근로자 수를 보면 기업이 68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

어서 지자체(510명), 학교(498명), 국가기관(307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직장어린이집 직접설치 국가기관은 상시 여성근로자 수가 200명 미만인 경우가 57.8%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자체와 학교는 상시 여성근로자 수 500명 이상 ~ 1,000명 미만인 경우의 비중이 각각 34.6%, 39.4%로, 국가기관(10.8%)과 기업(18.2%)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설치 사업장의 보육수요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4-11>과 같다.

<표 4-11> 직장어린이집 직접설치 사업장의 보육수요별 현황

(단위: 개소, %, 명)

보육수요	계	국가	지자체	학교	기업
전체	534 (100.0)	83 (100.0)	78 (100.0)	33 (100.0)	340 (100.0)
100명 미만	107 (20.0)	14 (16.9)	27 (34.6)	9 (27.3)	57 (16.8)
100명 이상 ~ 200명 미만	100 (18.7)	15 (18.1)	18 (23.1)	10 (30.3)	57 (16.8)
200명 이상 ~ 300명 미만	78 (14.6)	18 (21.7)	15 (19.2)	6 (18.2)	39 (11.5)
300명 이상 ~ 400명 미만	43 (8.1)	6 (7.2)	3 (3.8)	2 (6.1)	32 (9.4)
400명 이상 ~ 500명 미만	29 (5.4)	7 (8.4)	-	-	22 (6.5)
500명 이상 ~ 1,000명 미만	56 (10.5)	2 (2.4)	5 (6.4)	-	49 (14.4)
1,000명 이상	48 (9.0)	1 (1.2)	1 (1.3)	1 (3.0)	45 (13.2)
무응답	73 (13.7)	20 (24.1)	9 (11.5)	5 (15.2)	39 (11.5)
평균 (명)	502	259	197	200	651

직접설치 사업장 534개소 중에서 73개소는 보육수요 현황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제외한 사업장의 보육대상 아동 수는 평균 502명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유형별로 살펴보면, 기업이 651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가(259명), 학교

(200명), 지자체(197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기업은 상대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도 많을 뿐만 아니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자체와 학교에 비해 30대 근로자 비중이 높은 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의 <표 4-12>는 직장어린이집 직접설치 사업장의 시도별 현황을 나타낸다.

<표 4-12> 직장어린이집 직접설치 사업장의 지역별 현황

(단위: 개소, %)

시도	계	국가	지자체	학교	기업
전체	534 (100.0)	83 (100.0)	78 (100.0)	33 (100.0)	340 (100.0)
서울	208 (39.0)	24 (28.9)	20 (25.6)	13 (39.4)	151 (44.4)
부산	25 (4.7)	5 (6.0)	3 (3.8)	3 (9.1)	14 (4.1)
대구	12 (2.2)	5 (6.0)	2 (2.6)	1 (3.0)	4 (1.2)
인천	24 (4.5)	4 (4.8)	9 (11.5)	1 (3.0)	10 (2.9)
광주	10 (1.9)	4 (4.8)	-	2 (6.1)	4 (1.2)
대전	30 (5.6)	6 (7.2)	5 (6.4)	3 (9.1)	16 (4.7)
울산	13 (2.4)	-	3 (3.8)	1 (3.0)	9 (2.6)
경기	80 (15.0)	10 (12.0)	19 (24.4)	1 (3.0)	50 (14.7)
강원	13 (2.4)	5 (6.0)	2 (2.6)	1 (3.0)	5 (1.5)
충북	16 (3.0)	5 (6.0)	2 (2.6)	1 (3.0)	8 (2.4)
충남	18 (3.4)	2 (2.4)	4 (5.1)	1 (3.0)	11 (3.2)
전북	11 (2.1)	2 (2.4)	1 (1.3)	4 (12.1)	4 (1.2)
전남	11 (2.1)	2 (2.4)	1 (1.3)	-	8 (2.4)
경북	18 (3.4)	1 (1.2)	-	-	17 (5.0)
경남	29 (5.4)	3 (3.6)	5 (6.4)	-	21 (6.2)
제주	5 (0.9)	-	1 (1.3)	1 (3.0)	3 (0.9)
세종	11 (2.1)	5 (6.0)	1 (1.3)	-	5 (1.5)

직장어린이집 직접설치 사업장은 절반 이상이 서울(39.0%), 경기(15.0%)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대전(5.6%), 경남(5.4%), 부산(4.7%), 인천(4.5%) 순으로 조사되었다.

사업장 유형에 따라 살펴보면, 국가기관은 다른 유형에 비해 서울·경기 비중(40.9%)이 낮고, 비교적 전국적인 분포를 보인다. 지자체의 경우 서울(25.6%)에 집중되어 있는 비율은 학교(39.4%)나 기업(44.4%)보다 낮았지만, 경기(24.4%)에 분포되어 있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교는 서울(39.5%)과 전북(12.1%)에 분포되어 있는 비중이 높으며 경기도 소재 직장어린이집 직접설치 학교는 1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경우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서울(44.4%)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설치 및 운영 형태별 현황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들이 설치한 직장어린이집 534개소의 설치 형태를 살펴보면 <표 4-13>과 같다. 설치 형태는 1개 사업장이 단독으로 설치한 경우와 2개 이상 복수 사업장이 공동으로 설치한 경우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들이 설치한 534개소 직장어린이집 중에서 단독으로 설치한 경우는 72.1%로 공동으로 설치한 경우(27.9%)에 비해 훨씬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업장 유형별로 보면, 지자체는 단독 설치가 96.2%로 공동 3.8%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수치이며, 이는 국가기관(78.3%), 학교(78.8%), 기업(64.4%)에 비해서도 훨씬 높은 수치이다. 반면, 공동 설치 비중이 가장 높은 사업장 유형은 기업(35.6%)으로 121개 사업장이 공동으로 설치·운영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단독으로 설치한 경우와 공동으로 설치한 경우의 상시 근로자 수를 비교한 결과 단독으로 설치한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보육수요 아동 수는 더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단독으로 설치된 385개소 중 직영으로 운영되는 어린이집은 128개소(33.2%)이며 257개소(66.7%)는 위탁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동으로 설치한 경우에는 149개소 중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32개소(21.4%)이며 위탁 운영하고 있는 곳은 117개소(78.6%)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동으로 운영되는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위탁 운영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13> 직장어린이집 설치 형태별 현황

(단위: 개소, %)

구분		계	단독	공동
전체		534 (100.0)	385 (72.1)	149 (27.9)
유형별	국가기관	83 (100.0)	65 (78.3)	18 (21.7)
	지자체	78 (100.0)	75 (96.2)	3 (3.8)
	학교	33 (100.0)	26 (78.8)	7 (21.2)
	기업	340 (100.0)	219 (64.4)	121 (35.6)
운영형태	직영	160	128	32
	위탁	374	257	117
평균 상시 근로자 수		2,267	2,372	1995
평균 상시 여성근로자 수		591	615	530
평균 보육수요		502	486	544
평균 정원		90	79	118
평균 현원		74	64	100

설치의무 사업장들이 설치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 형태별 특징을 비교해 보면 다음의 <표4-14>와 같다. 전체 직장어린이집 534개소 중에서 직영으로 운영되는 시설은 160개소(30.0%)이며 374개소(70.0%)가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위탁 운영사업장이 직접 운영하는 사업장의 두 배 이상으로 비중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업장 유형에 따른 운영형태를 살펴보면 지자체는 위탁 운영하는 비율이 약 80%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국가기관과 기업도 위탁을 하는 경우가 70% 이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학교는 직영으로 운영하는 비중이 위탁 운영 비중에 비해 약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의 경우 대학교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련 전공학과와 연계하여 직접 운영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직영으로 운영한 경우와 위탁으로 운영한 경우의 상시 근로자 수를 비교한 결과 위탁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의 평균 근로자 수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와 함께 평균 상시 여성근로자 수, 평균 보육수요, 평균 정원 및 현원 등도 직접 운영하는 시설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14> 직장어린이집 운영 형태별 현황

(단위: 개소, %)

구분		계	직영	위탁
전체		534 (100.0)	160 (30.0)	374 (70.0)
유형별	국가기관	83 (100.0)	22 (26.5)	61 (73.5)
	지자체	78 (100.0)	16 (20.5)	62 (79.5)
	학교	33 (100.0)	20 (60.6)	13 (39.4)
	기업	340 (100.0)	102 (30.0)	238 (70.0)
설치유형	단독	385	128	257
	공동	149	32	117
평균 상시 근로자 수		2,267	1,368	2651
평균 상시 여성근로자 수		591	474	641
평균 보육수요		502	253	602
평균 정원		90	78	94
평균 현원		74	60	78

3. 유형 및 규모별 정원 및 현원 현황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들의 유형 및 규모별로 직장어린이집의 정원 충족률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정원 및 현원 현황을 유형별로 살펴보고자 한다<표 4-15>. 어린이집 규모는 20명 이하, 21명 ~ 39명, 40명 ~ 49명, 50명 ~ 80명, 81명 ~ 99명, 100명 ~ 160명, 161명 이상의 집단으로 나누었다⁶⁾. 전체적으로 40명~80명 정원의 시설비율이 약 43%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자체의 경우 50명~80명 정원의 시설 비율이 29.5%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직장어린이집 정원 규모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국가기관과 지자체의 직장어린이집의 정원 충족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정원 충족률이 다소 낮게 조사되었다. 일부 기업의 경우 공간적 쾌적성을 높이기 위해서 의

6) 집단을 이렇게 구분한 이유는 보건복지부 '보육통계'의 어린이집 규모와 범주를 동일하게 하여 추후 두 자료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임.

도적으로 인가받은 정원수 보다 적은 수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경우도 포함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규모면에서는 규모가 클수록 정원 충족률이 높은 경향이 있으며 규모가 21명~39명 인 경우 국가기관의 경우에도 정원 충족률이 7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5> 직장어린이집 규모별 정원·현원 현황

(단위: 개소, %, 명)

구분	계	국가	지자체	학교	기업
전체 사업장수	534 (100.0)	83 (100.0)	78 (100.0)	33 (100.0)	340 (100.0)
평균 정원	90	100	70	100	92
평균 현원	74	85	62	86	73
20명 이하	15 (2.8)	-	1 (1.3)	-	14 (4.1)
평균 정원	18	-	20	-	18
평균 현원	12	-	20	-	12
21명 ~ 39명	55 (10.3)	8 (9.6)	11 (14.1)	6 (18.2)	30 (8.8)
평균 정원	33	30	35	34	33
평균 현원	23	21	29	24	22
40명 ~ 49명	110 (20.6)	11 (13.3)	17 (21.8)	4 (12.1)	78 (22.9)
평균 정원	47	46	47	46	48
평균 현원	34	37	41	34	31
50명 ~ 80명	121 (22.7)	20 (24.1)	23 (29.5)	4 (12.1)	74 (21.8)
평균 정원	67	68	66	64	67
평균 현원	51	58	55	58	46
81명 ~ 99명	55 (10.3)	10 (12.0)	16 (20.5)	7 (21.2)	22 (6.5)
평균 정원	93	92	93	96	93
평균 현원	78	77	88	82	70
100명 ~ 160명	61 (11.4)	7 (8.4)	8 (10.3)	3 (9.1)	43 (12.6)
평균 정원	127	129	127	129	127
평균 현원	107	115	115	118	103
161명 이상	58 (10.9)	10 (12.0)	1 (1.3)	6 (18.2)	41 (12.1)
평균 정원	250	267	168	216	253
평균 현원	213	232	145	181	215
무응답	59 (11.0)	17 (20.5)	1 (1.3)	3 (9.1)	38 (11.2)

직장어린이집 정원·현원에 이어서 직장어린이집 이용률 및 사업장 소속 근로자 자녀 비율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4-16>. 정원 충족률은 정원에서 차지하는 현원의 비율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전체 직장어린이집의 평균 정원 충족률은 72.4% 조사되었

다. 이는 2013년 보육통계의 전국 정원 충족률 83.4%와 비교해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이다. 유형별 정원 충족률을 살펴보면, 국가(82.3%), 지자체(88%)의 경우 학교(76.2%)나 기업(65.6%)의 직장어린이집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정원 충족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부 기업의 경우 공간적 쾌적성을 높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인가받은 정원수 보다 적은 수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경우도 포함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자녀가 직장어린이집 정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적으로 60.5%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사업장 유형별로 지자체(78.1%), 국가(68.9%), 기업(55.2%), 학교(45.7%) 순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교의 경우 사업장 소속 근로자 자녀가 정원의 50% 미만으로 다른 사업장 유형에 비해 낮은 점이 두드러진다.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자녀가 직장어린이집 현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적으로 77.9%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업장 유형별로는 지자체(85.7%), 국가(82.8%), 기업(76.6%), 학교(56.6%) 순으로 근로자 자녀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직장어린이집은 필요에 따라 자회사(또는 계열사) 근로자 자녀, 인근의 타사 근로자 자녀, 일반 주민아동도 보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보육아동 정원의 1/3이상이 자사 또는 공동 참여사업장 근로자 자녀이어야 하도록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4 보육사업안내).

<표 4-16> 직장어린이집 정원 충족률 및 사업장 근로자 자녀비율 현황

(단위: 명, %)

구분	전체		국가		지자체		학교		기업	
	사례수	%								
정원충족률(현원/정원)	463	72.4	66	82.3	77	88.0	29	76.2	291	65.6
사업장소속자녀/정원	441	60.5	65	68.9	75	78.1	28	45.7	273	55.2
사업장소속자녀/현원	442	77.9	65	82.8	75	85.7	27	56.6	275	76.6

4. 운영비 및 인력지원 현황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상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경우, 공공기관이나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는 현황은 <표 4-17>과 같다. 전체 534개 직장어린이집 중 307개소가 공공기관 또는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운영비를 지원 받는지의 여부는 사업장 유형별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12.0%), 지자체(23.1%), 학교(15.2%)는 공공기관 또는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직장어린이집 운영비를 지원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기업의 경우(80%)와 비교해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일반적으로 국가, 지자체, 국공립학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보험의 지원금을 받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2장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고용노동부는 교재교구비 지원을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국가기관, 지자체, 학교는 그 외에 보건복지로부터의 운영비 지원만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운영비 지원은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 대상으로 하는 교재교구비 지원, 만 0~2세 아동 또는 장애아를 보육하는 경우 기본보육료 지원이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지원 역시 공공기관 또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운영비를 지원 받는 직장어린이집은 제외된다.

<표 4-17>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현황

(단위: 개소, %)

운영비 지원여부	계	국가	지자체	학교	기업
전체	534 (100.0)	83 (100.0)	78 (100.0)	33 (100.0)	340 (100.0)
지원 받음	307 (57.5)	10 (12.0)	18 (23.1)	5 (15.2)	274 (80.6)
지원 받지 않음	136 (25.5)	47 (56.6)	51 (65.4)	20 (60.6)	18 (5.3)
무응답	91 (17.0)	26 (31.3)	9 (11.5)	8 (24.2)	48 (14.1)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이 공공기관 또는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인력을 지원받는지에 대한 현황은 <표 4-18>과 같다. 전체 534개 직장어린이집 중에서는 328개소(61.4%)가 공공기관 또는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인력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외 206개소(38.6%)가 지원받지 않고 있거나 해당문항에 무응답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업의 경우 340개 사업장 중에 270개소(79.4%)가 인력에 대한 지원을 받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이는 운영비 지원과 마찬가지로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에 비해서 월등히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18> 직장어린이집 인력 지원 현황

(단위: 개소, %)

인력 지원여부	계	국가	지자체	학교	기업
전체	534 (100.0)	83 (100.0)	78 (100.0)	33 (100.0)	340 (100.0)
지원 받음	328 (61.4)	23 (27.7)	26 (33.3)	9 (27.3)	270 (79.4)
지원 받지 않음	8 (1.5)	3 (3.6)	3 (3.8)	1 (3.0)	1 (0.3)
무응답	198 (37.1)	57 (68.7)	49 (62.8)	23 (69.7)	69 (20.3)

인력지원의 경우,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과 같은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수가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주 단체 포함)가 설치·운영하는 보육현원 20인 이상의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 보육아동 수에 따라 원장, 보육교사, 취사부 임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보육현원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며,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녀수가 전체 보육아동 수의 1/3 이상이나 1/4이상이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다른 사업장 소속 피보험자 포함)의 자녀의 수가 1/2 이상이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기관, 지자체의 직장어린이집은 이러한 지원을 받기 어렵다. 그러나 국가기관과 지자체가 설치·운영한 직장어린이집도 보건복지부로부터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월급여, 근무수당 지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및 교사겸직원장 지원,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은 받을 수 있다.

제3절 보육수당 지급 사업장 현황

1. 규모별 현황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 중 직접설치하기 어려운 사업장들은 보육수당을 지급하거나 위탁보육을 시행함으로써 설치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보육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사업장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4-19>과 같다.

<표 4-19> 보육수당 지급 사업장의 규모별 (상시 근로자수) 현황

(단위: 개소, %, 명)

상시 근로자 수	계	국가	지자체	학교	기업
전체	242 (100.0)	7 (100.0)	70 (100.0)	33 (100.0)	132 (100.0)
500명 미만	22 (9.1)	2 (28.6)	12 (17.1)	-	8 (6.1)
500명 이상 ~ 600명 미만	37 (15.3)	-	12 (17.1)	5 (15.2)	20 (15.2)
600명 이상 ~ 700명 미만	34 (14.0)	-	8 (11.4)	6 (18.2)	20 (15.2)
700명 이상 ~ 800명 미만	18 (7.4)	-	6 (8.6)	3 (9.1)	9 (6.8)
800명 이상 ~ 900명 미만	19 (7.9)	-	8 (11.4)	1 (3.0)	10 (7.6)
900명 이상 ~ 1,000명 미만	16 (6.6)	-	5 (7.1)	2 (6.1)	9 (6.8)
1,000명 이상 ~ 1,500명 미만	44 (18.2)	2 (28.6)	12 (17.1)	9 (27.3)	21 (15.9)
1,500명 이상	52 (21.5)	3 (42.9)	7 (10.0)	7 (21.2)	35 (26.5)
평균 (명)	1,172	2,509	838	1,362	1,230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 중 보육수당을 지급한 사업장은 총 242개소이며, 이 중에서 기업이 54.5%(132개소)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지자체 28.9%(70개소), 학교 13.6%(33개소), 국가 2.9%(7개소) 순으로 조사되었다.

사업장 유형별로 상시 근로자 현황을 보면, 평균 상시 근로자 수는 1,172명이며, 국가기관이 2,509명, 학교 1,362명, 기업 1,230명, 지자체가 838명으로 조사되었다.

보육수당을 지급한 사업장의 상시 여성근로자 수에 따른 현황을 살펴보면 평균 상시 여성근로자 수는 397명이며, 사업장 유형별로 국가기관의 경우 537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밖에 학교 477명, 기업 423명, 지자체는 29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4-20>.

<표 4-20> 보육수당 지급 사업장의 규모별 (상시 여성근로자 수) 현황

(단위: 개소, %, 명)

상시 여성근로자 수	계	국가	지자체	학교	기업
전체	242 (100.0)	7 (100.0)	70 (100.0)	33 (100.0)	132 (100.0)
100명 미만	43 (17.8)	1 (14.3)	4 (5.7)	-	38 (28.8)
100명 이상 ~ 200명 미만	50 (20.7)	1 (14.3)	21 (30.0)	6 (18.2)	22 (16.7)
200명 이상 ~ 300명 미만	44 (18.2)	-	20 (28.6)	8 (24.2)	16 (12.1)
300명 이상 ~ 400명 미만	30 (12.4)	1 (14.3)	9 (12.9)	7 (21.2)	13 (9.8)
400명 이상 ~ 500명 미만	23 (9.5)	1 (14.3)	8 (11.4)	4 (12.1)	10 (7.6)
500명 이상 ~ 1,000명 미만	33 (13.6)	2 (28.6)	8 (11.4)	7 (21.2)	16 (12.1)
1,000명 이상	19 (7.9)	1 (14.3)	-	1 (3.0)	17 (12.9)
평균 (명)	397	537	296	477	423

보육수당을 지급한 사업장의 보육수요 현황을 살펴보면 <표 4-21>과 같다.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사업장 242개소의 평균 보육수요는 264명이며, 기업의 평균 보육수요가 344명, 국가기관의 평균 보육수요는 259명, 지자체의 평균보육수요는 190명, 학교의 평균 보육수요가 109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21> 보육수당 지급 사업장의 보육수요별 현황

(단위: 개소, %, 명)

보육수요	계	국가	지자체	학교	기업
전체	242 (100.0)	7 (100.0)	70 (100.0)	33 (100.0)	132 (100.0)
100명 미만	47 (19.4)	1 (14.3)	12 (17.1)	16 (48.5)	18 (13.6)
100명 이상 ~ 200명 미만	74 (30.6)	2 (28.6)	28 (40.0)	14 (42.4)	30 (22.7)
200명 이상 ~ 300명 미만	44 (18.2)	2 (28.6)	13 (18.6)	2 (6.1)	27 (20.5)
300명 이상 ~ 400명 미만	27 (11.2)	1 (14.3)	12 (17.1)	-	14 (10.6)
400명 이상 ~ 500명 미만	13 (5.4)	-	1 (1.4)	-	12 (9.1)
500명 이상 ~ 1,000명 미만	17 (7.0)	1 (14.3)	-	-	16 (12.1)
1,000명 이상	6 (2.5)	-	-	-	6 (4.5)
무응답	14 (5.8)	-	4 (5.7)	1 (3.0)	9 (6.8)
평균 (명)	264	255	190	109	344

2. 지역별 현황

보육수당 지급 사업장의 시도별 현황은 <표 4-22>와 같다. 보육수당 지급 사업장 242개소의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이 27.3%(66개소)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경기(9.1%), 경북(7.9%), 경남(6.2%), 부산(6.2%)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보육수당 지급 사업장은 수도권 및 영남권에 많이 분포해 있으며 사업장 유형에 따라 구분해서 보면,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기업의 절반 이상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으며, 서울에는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지자체는 없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지자체의 경우 다른 유형의 사업장에 비해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비율이 강원, 호남권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2> 보육수당 지급 사업장의 지역별 현황

(단위: 개소, %)

시도	계	국가	지자체	학교	기업
전체	242 (100.0)	7 (100.0)	70 (100.0)	33 (100.0)	132 (100.0)
서울	66 (27.3)	2 (28.6)	-	8 (24.2)	56 (42.4)
부산	15 (6.2)	1 (14.3)	5 (7.1)	5 (15.2)	4 (3.0)
대구	7 (2.9)	-	5 (7.1)	-	2 (1.5)
인천	6 (2.5)	-	-	1 (3.0)	5 (3.8)
광주	9 (3.7)	1 (14.3)	5 (7.1)	1 (3.0)	2 (1.5)
대전	8 (3.3)	-	1 (1.4)	1 (3.0)	6 (4.5)
울산	12 (5.0)	-	3 (4.3)	1 (3.0)	8 (6.1)
경기	22 (9.1)	1 (14.3)	5 (7.1)	3 (9.1)	13 (9.8)
강원	14 (5.8)	-	9 (12.9)	1 (3.0)	4 (3.0)
충북	10 (4.1)	1 (14.3)	4 (5.7)	1 (3.0)	4 (3.0)
충남	11 (4.5)	-	4 (5.7)	2 (6.1)	5 (3.8)
전북	14 (5.8)	-	7 (10.0)	2 (6.1)	5 (3.8)
전남	9 (3.7)	-	6 (8.6)	1 (3.0)	2 (1.5)
경북	19 (7.9)	-	10 (14.3)	4 (12.1)	5 (3.8)
경남	15 (6.2)	-	6 (8.6)	2 (6.1)	7 (5.3)
제주	2 (0.8)	-	-	-	2 (1.5)
세종	3 (1.2)	1 (14.3)	-	-	2 (1.5)

3. 미설치 사유 및 향후 설치계획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사유를 살펴본 결과는 <표 4-23>과 같다. 보육수당 지급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사유는 장소확보 곤란(41.5%), 기타(23.0%), 재정 부담(16.1%), 보육수요 부족(2.4%) 순으로 나타났으며 사업장 유형별로 보면, 국가기관과 지자체는 재정보호 곤란의 응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반면, 학교와 기업은 장소확보 곤란의 비중이 가장 많았다.

〈표 4-23〉 보육수당 지급 사업장의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사유

(단위 : 개소, %)

미이행 사유	계	국가	지자체	학교	기업
전체	248* (100.0)	7 (100.0)	76 (100.0)	33 (100.0)	132 (100.0)
보육수요 부족	6 (2.4)	-	4 (5.3)	1 (3.0)	1 (0.8)
재정 부담	40 (16.1)	1 (14.3)	18 (23.7)	10 (30.3)	11 (8.3)
장소확보 곤란	103 (41.5)	4 (57.1)	44 (57.9)	10 (30.3)	45 (34.1)
기타**	57 (23.0)	1 (14.3)	10 (13.2)	9 (27.3)	37 (28.0)
무응답	42 (16.9)	1 (14.3)	-	3 (9.1)	38 (28.8)

주) * 보육수당 사업장 242개소가 복수응답하여 전체사업장은 248개소임

** 환경오염 및 안전우려, 원거리 위치, 2~3교대 근무자 다수 등

보육수당 지급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향후 설치계획을 조사한 결과는 <표 4-24>와 같다. 향후 직장어린이집 설치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 242개 사업장 중 91개(37.6%)사업장으로 조사되었으며 사업장 유형별로 살펴보면, 국가기관(57.1%), 지자체(51.4%), 학교(48.5%), 기업(26.5%) 순으로 향후 직장어린이집 설치계획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4-24〉 보육수당 지급 사업장의 직장어린이집 설치계획

(단위 : 개소, %)

설치 계획 (보육수당)	계	국가	지자체	학교	기업
전체	242 (100.0)	7 (100.0)	70 (100.0)	33 (100.0)	132 (100.0)
있음	91 (37.6)	4 (57.1)	36 (51.4)	16 (48.5)	35 (26.5)
없음	68 (28.1)	2 (28.6)	13 (18.6)	11 (33.3)	42 (31.8)
무응답	83 (34.3)	1 (14.3)	21 (30.0)	6 (8.2)	55 (41.7)

제4절 위탁보육 사업장 현황

1. 규모별 현황

위탁보육을 통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사업장은 총 101개소였으며 그 중에서 기업의 비중이 79.2%로 가장 컸고, 국가기관(9.9%), 학교(6.9%), 지자체(4.0%)순으로 조사되었다<표 4-25>.

<표 4-25> 위탁보육 사업장의 규모별 (상시 근로자 수) 현황

(단위: 개소, %, 명)

상시 근로자 수	계	국가	지자체	학교	기업
전체	101 (100.0)	10 (100.0)	4 (100.0)	7 (100.0)	80 (100.0)
500명 미만	5 (5.0)	0 (0.0)	0 (0.0)	0 (0.0)	5 (6.3)
500명 이상 ~ 600명 미만	9 (8.9)	0 (0.0)	1 (25.0)	2 (28.6)	6 (7.5)
600명 이상 ~ 700명 미만	16 (15.8)	3 (30.0)	0 (0.0)	0 (0.0)	13 (16.3)
700명 이상 ~ 800명 미만	14 (13.9)	0 (0.0)	1 (25.0)	2 (28.6)	11 (13.8)
800명 이상 ~ 900명 미만	5 (5.0)	0 (0.0)	1 (25.0)	1 (14.3)	3 (3.8)
900명 이상 ~ 1,000명 미만	6 (5.9)	0 (0.0)	0 (0.0)	0 (0.0)	6 (7.5)
1,000명 이상 ~ 1,500명 미만	24 (23.8)	6 (60.0)	1 (25.0)	1 (14.3)	16 (20.0)
1,500명 이상	22 (21.8)	1 (10.0)	0 (0.0)	1 (14.3)	20 (25.0)
평균 (명)	1,174	1,151	888	918	1,214

위탁보육 실시 사업장 101개소의 평균 상시 근로자 수는 1,174명이며, 유형별로 살펴보면 기업이 1,214명, 국가기관 1,151명, 학교 918명, 지자체 888명으로 조사되었다. 앞서 분석된 보육수당을 지급한 사업장의 경우 국가기관의 평균 근로자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된 반면 위탁보육을 실시하는 사업장의 평균 근로자는 국가기관보다 기업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국가기관의 경우 위탁보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경우 보육수당을 제공하는 기관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관일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며, 반대로 기업의 경우 위탁보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경우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보다 규모가 큰 사업장임을 시사한다.

위탁보육 실시 사업장의 상시 여성근로자 현황을 살펴보면, 평균 상시 여성근로자 수는 447명이며, 사업장 유형별로는 국가기관 585명, 기업 444명, 지자체 356명, 학교 338명 순으로 조사되었다<표4-26>. 앞서 살펴본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위탁보육을 실시하는 사업장의 평균 여성근로자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6> 위탁보육 사업장의 규모별 (상시 여성근로자 수) 현황

(단위: 개소, %, 명)

상시 여성근로자 수	계	국가	지자체	학교	기업
전체	101 (100.0)	10 (100.0)	4 (100.0)	7 (100.0)	80 (100.0)
100명 미만	24 (23.8)	2 (20.0)	-	-	22 (27.5)
100명 이상 ~ 200명 미만	9 (8.9)	-	-	-	9 (11.3)
200명 이상 ~ 300명 미만	13 (12.9)	-	2 (50.0)	3 (42.9)	8 (10.0)
300명 이상 ~ 400명 미만	11 (10.9)	-	1 (25.0)	3 (42.9)	7 (8.8)
400명 이상 ~ 500명 미만	6 (5.9)	1 (10.0)	-	-	5 (6.3)
500명 이상 ~ 1,000명 미만	26 (25.7)	6 (60.0)	1 (25.0)	1 (14.3)	18 (22.5)
1,000명 이상	12 (11.9)	1 (10.0)	-	-	11 (13.8)
평균 (명)	447	585	356	338	444

위탁보육 실시 사업장의 보육수요 현황은 <표 4-27>과 같다. 위탁보육 실시 사업장의 평균 보육수요는 305명으로 조사되었으며, 사업장 유형별로 기업이 328명, 국가기관 257명, 학교 126명, 지자체는 113명으로 조사되었다.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위탁보육 사업장의 평균 보육수요가 다소 높으나 기업의 경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보다 평균 보육수요 규모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가, 지자체, 학교의 경우 보육수요가 400명 이상이라고 응답한 사례는 1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27> 위탁보육 사업장의 보육수요별 현황

(단위: 개소, %, 명)

보육수요	계	국가	지자체	학교	기업
전체	101 (100.0)	10 (100.0)	4 (100.0)	7 (100.0)	80 (100.0)
100명 미만	17 (16.8)	-	1 (25.0)	3 (42.9)	13 (16.3)
100명 이상 ~ 200명 미만	29 (28.7)	2 (20.0)	1 (25.0)	2 (28.6)	24 (30.0)
200명 이상 ~ 300명 미만	14 (13.9)	1 (10.0)	-	-	13 (16.3)
300명 이상 ~ 400명 미만	17 (16.8)	3 (30.0)	-	1 (14.3)	13 (16.3)
400명 이상 ~ 500명 미만	3 (3.0)	-	-	-	3 (3.8)
500명 이상 ~ 1,000명 미만	7 (6.9)	-	-	-	7 (8.8)
1,000명 이상	2 (2.0)	-	-	-	2 (2.5)
무응답	12 (11.9)	4 (40.0)	2 (50.0)	1 (14.3)	5 (6.3)
평균 (명)	305	257	113	126	328

2. 지역별 현황

위탁보육 실시 사업장의 시도별 현황은 <표 4-28>과 같다. 위탁보육 사업장 101개소 중에서 서울(24.8%)과 경기(20.8%)에 분포한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부산(10.9%), 대구(6.9%), 대전(6.9%), 충남(6.9%), 경북(6.9%)이 주요 비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제주에는 위탁보육 사업장이 전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28> 위탁보육 사업장의 지역별 현황

(단위: 개소, %)

시도	계	국가	지자체	학교	기업
전체	101 (100.0)	10 (100.0)	4 (100.0)	7 (100.0)	80 (100.0)
서울	25 (24.8)	3 (30.0)	1 (25.0)	1 (14.3)	20 (25.0)
부산	11 (10.9)	-	-	2 (28.6)	9 (11.3)
대구	7 (6.9)	1 (10.0)	1 (25.0)	-	5 (6.3)
인천	1 (1.0)	-	-	-	1 (1.3)
광주	1 (1.0)	-	-	-	1 (1.3)
대전	7 (6.9)	-	-	-	7 (8.8)
울산	1 (1.0)	-	-	-	1 (1.3)
경기	21 (20.8)	2 (20.0)	2 (50.0)	-	17 (21.3)
강원	3 (3.0)	2 (20.0)	-	1 (14.3)	-
충북	3 (3.0)	-	-	1 (14.3)	2 (2.5)
충남	7 (6.9)	1 (10.0)	-	-	6 (7.5)
전북	2 (2.0)	-	-	-	2 (2.5)
전남	2 (2.0)	-	-	-	2 (2.5)
경북	7 (6.9)	-	-	1 (14.3)	6 (7.5)
경남	2 (2.0)	1 (10.0)	-	1 (14.3)	0 (0.0)
제주	-	-	-	-	-
세종	1 (1.0)	-	-	-	1 (1.3)

3. 미설치 사유 및 향후 설치계획

위탁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사유를 살펴본 결과는 <표 4-29>와 같다. 장소확보 곤란(45.5%), 기타(23.7%), 재정 부담(15.8%), 보육수요 부족(2.0%) 순으로 미설치 사유를 밝히고 있어 전반적으로 장소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반면, 보육수요 부족은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사유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앞서 분석된 보육수당 지급 사업장의 미설치 사유에 대한 응답과 유사한 유형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향후 직장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소확보에서 겪는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여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표 4-29> 위탁보육 사업장의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사유

(단위 : 개소, %)

미이행 사유	계	국가	지자체	학교	기업
전체	101 (100.0)	10 (100.0)	4 (100.0)	7 (100.0)	80 (100.0)
보육수요 부족	2 (2.0)	1 (10.0)	0 (0.0)	0 (0.0)	1 (1.3)
재정 부담	16 (15.8)	2 (20.0)	1 (25.0)	2 (28.6)	11 (13.8)
장소확보 곤란	46 (45.5)	5 (50.0)	1 (25.0)	3 (42.9)	37 (46.3)
기타**	24 (23.7)	2 (20.0)	1 (25.0)	1 (14.3)	20 (25.0)
무응답	13 (12.9)	-	1 (25.0)	1 (14.3)	11 (13.8)

주) ** 환경오염 및 안전우려, 원거리 위치, 2~3교대 근무자 다수 등

향후 직장어린이집 설치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101개 사업장 중 48개소 (47.5%)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사업장의 향후 설치계획 비율보다 약 10%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유형별로 보면, 지자체 70%, 기업 50%, 국가 30%, 학교 28.6% 순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계획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위탁보육 사업장 전체에서 향후 직장어린이집 설치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사업장은 28.7%였고, 무응답도 23.8%인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4-30>.

〈표 4-30〉 위탁보육 사업장의 직장어린이집 설치계획

(단위 : 개소, %)

설치 계획 (위탁보육)	계	국가	지자체	학교	기업
전체	101 (100.0)	10 (100.0)	4 (100.0)	7 (100.0)	80 (100.0)
있음	48 (47.5)	3 (30.0)	3 (75.0)	2 (28.6)	40 (50.0)
없음	29 (28.7)	4 (40.0)	0 (0.0)	4 (57.1)	21 (26.3)
무응답	24 (23.8)	3 (30.0)	1 (25.0)	1 (14.3)	19 (23.8)



제5장 미이행 사업장 현황

제1절 일반 현황

제2절 명단공표 대상 사업장 현황

5

미이행 사업장 현황 <



제1절 일반 현황

1. 규모별 현황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에 따른 현황은 <표 5-1>과 같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은 전체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 1074개소 중에서 197개 사업장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162개소(82.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서 학교 22개소(11.2%), 국가기관 10개소(5.1%), 지자체 3개소(1.5%)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1> 미이행 사업장 규모별 (상시 근로자 수) 현황

(단위: 개소, %, 명)

상시 근로자 수	계	국가	지자체	학교	기업
전체	197 (100.0)	10 (100.0)	3 (100.0)	22 (100.0)	162 (100.0)
500명 미만	9 (4.6)	-	-	-	9 (5.6)
500명 이상 ~ 600명 미만	52 (26.4)	3 (30.0)	-	9 (40.9)	40 (24.7)
600명 이상 ~ 700명 미만	34 (17.3)	2 (20.0)	2 (66.7)	1 (4.5)	29 (17.9)
700명 이상 ~ 800명 미만	24 (12.2)	-	-	1 (4.5)	23 (14.2)
800명 이상 ~ 900명 미만	13 (6.6)	2 (20.0)	-	1 (4.5)	10 (6.2)
900명 이상 ~ 1,000명 미만	17 (8.6)	2 (20.0)	-	4 (18.2)	11 (6.8)
1,000명 이상 ~ 1,500명 미만	25 (12.7)	1 (10.0)	-	4 (18.2)	20 (12.3)
1,500명 이상	23 (11.7)	-	1 (33.3)	2 (9.1)	20 (12.3)
평균 (명)	992	785	1,103	875	396

평균 상시 근로자 수는 992명으로 조사되었으며, 사업장 유형별로는 지자체가 1,10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학교 875명, 국가기관 785명, 기업 396명으로 나타났다. 미이행 사업장의 평균 근로자 수가 지자체가 가장 많다는 것은 지자체의 미이행 사업장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꽤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기업의 경우에는 평균 근로자 수가 396명인 상황으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사업장들이 미이행 사업장들인 것으로 판단된다.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의 상시 여성근로자 현황을 살펴보면, 평균 상시 여성근로자 수는 318명이며, 사업장 유형별로 봤을 때 상시 근로자 수와 마찬가지로 지자체의 평균 상시 여성근로자 수가 439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상시 여성근로자 수가 가장 작은 사업장 유형은 기업(175명)으로 나타났다. 학교와 국가기관의 평균 상시 여성근로자 수는 각각 316명, 181명으로 조사되었다<표 5-2>.

<표 5-2> 미이행 사업장의 규모별 (상시 여성근로자 수) 현황

(단위: 개소, %, 명)

상시 여성근로자 수	계	국가	지자체	학교	기업
전체	197 (100.0)	10 (100.0)	3 (100.0)	22 (100.0)	162 (100.0)
100명 미만	53 (26.9)	3 (30.0)	-	2 (9.1)	48 (29.6)
100명 이상 ~ 200명 미만	32 (16.2)	2 (20.0)	-	5 (22.7)	25 (15.4)
200명 이상 ~ 300명 미만	29 (14.7)	4 (40.0)	2 (66.7)	4 (18.2)	19 (11.7)
300명 이상 ~ 400명 미만	27 (13.7)	1 (10.0)	-	4 (18.2)	22 (13.6)
400명 이상 ~ 500명 미만	22 (11.2)	-	-	4 (18.2)	18 (11.1)
500명 이상 ~ 1,000명 미만	29 (14.7)	-	1 (33.3)	3 (13.6)	25 (15.4)
1,000명 이상	5 (2.5)	-	-	-	5 (3.1)
평균 (명)	318	181	439	316	175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의 보육수요 현황은 <표 5-3>과 같다. 미이행 사업장의 평균 보육수요는 105명으로 나타났으며, 국가기관이 184명으로 보육수요가 가장 많았으며, 지자체의 경우 평균 보육수요는 163명으로 국가기관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학교와 기업의 보육수요는 각각 98명, 79명으로 국가와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육수요 아동 수가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앞서 분석된 설치의무 이행 사업장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미이행 사업장의 보육수요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3> 미이행 사업장의 보육수요별 현황

(단위: 개소, %, 명)

보육수요	계	국가	지자체	학교	기업
전체	197 (100.0)	10 (100.0)	3 (100.0)	22 (100.0)	162 (100.0)
100명 미만	55 (27.9)	3 (30.0)	2 (66.7)	12 (54.5)	38 (23.5)
100명 이상 ~ 200명 미만	73 (37.1)	6 (60.0)	-	5 (22.7)	62 (38.3)
200명 이상 ~ 300명 미만	30 (15.2)	-	-	1 (4.5)	29 (17.9)
300명 이상 ~ 400명 미만	12 (6.1)	-	1 (33.3)	1 (4.5)	10 (6.2)
400명 이상 ~ 500명 미만	4 (2.0)	-	-	-	4 (2.5)
500명 이상 ~ 1,000명 미만	9 (4.6)	1 (10.0)	-	-	8 (4.9)
1,000명 이상	3 (1.5)	-	-	-	3 (1.9)
무응답	11 (5.6)	-	-	3 (13.6)	8 (4.9)
평균 (명)	105	184	163	98	79

2. 지역별 현황

미이행 사업장의 시도별 현황은 <표 5-4>와 같다.

<표 5-4> 미이행 사업장의 지역별 현황

(단위: 개소, %)

시도	계	국가	지자체	학교	기업
전체	197 (100.0)	10 (100.0)	3 (100.0)	22 (100.0)	162 (100.0)
서울	64 (32.5)	3 (30.0)	1 (33.3)	6 (27.3)	54 (33.3)
부산	13 (6.6)	2 (20.0)	-	1 (4.5)	10 (6.2)
대구	9 (4.6)	1 (10.0)	-	1 (4.5)	7 (4.3)
인천	9 (4.6)	1 (10.0)	1 (33.3)	-	7 (4.3)
광주	1 (0.5)	-	-	-	1 (0.6)
대전	3 (1.5)	-	-	1 (4.5)	2 (1.2)
울산	7 (3.6)	1 (10.0)	-	-	6 (3.7)
경기	31 (15.7)	2 (20.0)	-	4 (18.2)	25 (15.4)
강원	6 (3.0)	-	-	2 (9.1)	4 (2.5)
충북	7 (3.6)	-	-	2 (9.1)	5 (3.1)
충남	5 (2.5)	-	-	1 (4.5)	4 (2.5)
전북	3 (1.5)	-	-	-	3 (1.9)
전남	5 (2.5)	-	1 (33.3)	1 (4.5)	3 (1.9)
경북	12 (6.1)	-	-	2 (9.1)	10 (6.2)
경남	19 (9.6)	-	-	1 (4.5)	18 (11.1)
제주	1 (0.5)	-	-	-	1 (0.6)
세종	2 (1.0)	-	-	-	2 (1.2)

미이행 사업장의 시·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절반 정도가 수도권(서울 32.5%, 경기 15.7%)에 소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광주와 제주 지역에는 직장어린이집 미이행 사업장이 각각 1개소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업장 유형별로 보면, 미이행 국가기관이 소재한 지역은 서울·경기(5개소), 부산(2개소), 대구(1개소), 인천(1개소), 울산(1개소)이며 미이행 지자체가 소재한 지역은 서울(1개소), 인천(1개소), 전남(1개소) 지역으로 조사되었다. 학교와 기업은의 미이행 사업장의 분포는 서울·경기 비중이 높지만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미이행 사유 및 향후 이행계획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의 미이행 사유는 <표 5-5>와 같다.

<표 5-5> 미이행 사업장의 미이행 사유

(단위 : 개소, %)

미이행 사유	계	국가	지자체	학교	기업
전체	265* (100.0)	10 (100.0)	3 (100.0)	35 (100.0)	217 (100.0)
보육수요 부족	54 (20.4)	-	-	7 (20.0)	47 (21.7)
재정 부담	44 (16.6)	-	1 (33.3)	9 (25.7)	34 (15.7)
장소확보 곤란	102 (38.5)	2 (20.0)	1 (33.3)	11 (31.4)	88 (40.6)
기타**	27 (10.2)	-	1 (33.3)	6 (17.1)	20 (9.2)
무응답	38 (14.3)	8 (80.0)	-	2 (5.7)	28 (12.9)

주) * 미이행 사업장 197개소가 복수응답하여 전체사업장은 265개소임

** 환경오염 및 안전우려, 원거리 위치, 2~3교대 근무자 다수 등

미이행 사유는 보육수요 부족, 재정부담, 장소확보 곤란, 기타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으며, 미이행 사유로 가장 많이 응답한 항목은 장소확보 곤란(38.5%)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장소확보 곤란에 이어서 보육수요 부족(20.5%), 재정 부담(16.6%), 기타

(10.2%) 순으로 응답 비중이 높았다. 이들이 제시한 기타 사유로는 환경오염 및 안전 우려, 원거리 위치, 2~3교대 근무자 다수 등이 있었다.

사업장 유형별로 보면, 국가기관은 미이행 사유에 대해서 8개 기관이 무응답 하였으며 이들 해당 기관은 현재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자체는 재정 부담, 장소확보 곤란, 기타로 1개소씩 응답하였다. 학교는 장소확보 곤란이 31.4%로 가장 많았고, 재정부담(25.7%), 보육수요 부족(20.0%)순으로 응답하였다. 기업은 미이행 사유에 대해 장소확보 곤란(40.6%), 보육수요 부족(21.7%), 재정 부담(15.7%), 기타(9.2%) 순으로 응답하였다.

미이행 사업장들의 향후 이행계획을 살펴보면 <표 5-6>과 같다.

<표 5-6> 미이행 사업장의 향후 이행계획

(단위 : 개소, %)

미이행 사유	계	국가	지자체	학교	기업
전체	197 (100.0)	10 (5.1)	3 (1.5)	22 (11.2)	162 (82.2)
설치	71 (36.0)	7	2	8	54
위탁보육	26 (13.2)	-	-	5	21
계획 없음	52 (26.4)	1	-	6	45
무응답	48 (24.4)	2	1	3	42

미이행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봤을 때, 36.0%(71개소)는 향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응답하였고, 13.2%(26개소)는 위탁보육을 통한 이행계획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미이행 사업장의 절반 정도는 이행계획이 없거나(26.4%), 해당 문항에 무응답(24.4%)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2절 명단공표 대상 사업장 현황

1. 명단공표 제외사유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은 총 197개소로 조사되었으나 이들 중 35개 사업장은 명단공표에서 제외되었다. 영유아 보육법상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이 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건축비용의 일부를 집행하는 등 직장어린이집 설치 중인 경우, 상시 근로자의 특성상 보육수요가 없는 등 명단의 공표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명단공표에서 제외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 조사 결과 명단공표 제외 대상 사업장 35개소는 모두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의5(명단 공표 제외 사유)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건축비용의 일부를 집행하는 등 직장어린이집 설치 중인 경우'로 조사되었다. 설치 중이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경우 공표 제외 사유로 인정하였다.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로는 설계도, 건축물의 공사 착공신고서, 공사계약서, 건축허가서, 착공신고서, 조감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직장어린이집운영체선정 협약서, 세입세출 예산명세서 등의 해당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 밖에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이 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상시 근로자의 특성상 보육수요가 없는 등 명단의 공표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사례는 전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표5-7>.

〈표 5-7〉 명단공표 제외 사유별 현황

(단위 : 개소, %)

미이행 사유	계	국가	지자체	학교	기업
계	35 (100.0)	10 (27.8)	2 (5.7)	3 (8.6)	20 (57.1)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이 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	-	-	-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건축비용의 일부를 집행하는 등 직장어린이집 설치 중인 경우	35 (100.0)	10 (27.8)	2 (5.7)	3 (8.6)	20 (57.1)
상시 근로자의 특성상 보육수요가 없는 등 명단의 공표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	-

공표 제외된 사업장을 유형별로 보면, 기업이 57.1%(20개소)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국가기관 27.8%(10개소), 학교 8.6%(3개소), 지자체 5.7%(2개소) 순으로 조사되었다.

2. 규모별 현황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에 따른 명단공표 대상 사업장의 규모별 현황은 다음의 <표5-8>과 같다.

<표 5-8> 명단공표 대상 사업장의 규모별 (상시 근로자수) 현황

(단위: 개소, %, 명)

상시 근로자 수	계	국가	지자체	학교	기업
전체	162 (100.0)	-	1 (100.0)	19 (100.0)	142 (100.0)
500명 미만	7 (4.3)	-	-	-	7 (4.9)
500명 이상 ~ 600명 미만	46 (28.4)	-	-	8 (42.1)	38 (26.8)
600명 이상 ~ 700명 미만	29 (17.9)	-	1 (100.0)	1 (5.3)	27 (19.0)
700명 이상 ~ 800명 미만	20 (12.3)	-	-	1 (5.3)	19 (13.4)
800명 이상 ~ 900명 미만	9 (5.6)	-	-	1 (5.3)	8 (5.6)
900명 이상 ~ 1,000명 미만	12 (7.4)	-	-	3 (15.8)	9 (6.3)
1,000명 이상 ~ 1,500명 미만	21 (13.0)	-	-	4 (21.1)	17 (12.0)
1,500명 이상	18 (11.1)	-	-	1 (5.3)	17 (12.0)
평균 (명)	922	-	603	829	937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중 명단공표 대상 사업장은 162개소로 기업이 142개소, 학교 19개소, 지자체 1개소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앞서 미이행 사업장에 포함되었던 국가기관 10개 사업장은 모두 현재 설치중인 사업장으로 명단공표대상에

서 제외되었다.

기업과 학교의 경우 명단공표 대상사업장 중 500명 이상~600명 미만 규모의 사업장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평균 상시 근로자 수는 992명으로 조사되었으며, 사업장 유형별로는 기업이 93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학교 829명, 지자체 603명으로 나타났다. 미이행 사업장의 평균 근로자 수는 지자체가 1,103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지자체 미이행 기관 3개소 중 2개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 설치중’의 이유로 명단공표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에서 1개 지자체의 상시 근로자 수는 603명으로 조사되었다.

명단공표 대상 사업장의 상시 여성 근로자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5-9>와 같다.

<표 5-9> 명단공표 대상 사업장의 규모별 (상시 여성근로자 수) 현황

(단위: 개소, %, 명)

상시 여성근로자 수	계	국가	지자체	학교	기업
전체	162 (100.0)	-	1 (100.0)	19 (100.0)	142 (100.0)
100명 미만	43 (26.5)	-	-	1 (5.3)	42 (29.6)
100명 이상 ~ 200명 미만	27 (16.7)	-	-	4 (21.1)	23 (16.2)
200명 이상 ~ 300명 미만	20 (12.3)	-	1 (100.0)	4 (21.1)	15 (10.6)
300명 이상 ~ 400명 미만	24 (14.8)	-	-	4 (21.1)	20 (14.1)
400명 이상 ~ 500명 미만	22 (13.6)	-	-	4 (21.1)	18 (12.7)
500명 이상 ~ 1,000명 미만	22 (13.6)	-	-	2 (10.5)	20 (14.1)
1,000명 이상	4 (2.5)	-	-	-	4 (2.8)
평균 (명)	296	-	267	327	292

162개 명단공표 대상 사업장의 평균 상시 여성근로자 수는 296명이며, 사업장 유형별로 봤을 때는 상시 근로자 수와 달리 학교의 평균 상시 여성근로자 수(327명)가 기업(292명)이나 지자체(267명)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명단공표 대상 사업장의 보육수요 현황은 <표 5-10>과 같다. 명단공표 대상 사업장의 평균 보육수요는 192명이며, 사업장 유형별로는 기업이 206명, 학교 81명, 지자체 65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10> 명단공표 대상 사업장의 보육수요별 현황

(단위: 개소, %, 명)

보육수요	계	국가	지자체	학교	기업
전체	162 (100.0)	-	1 (100.0)	19 (100.0)	142 (100.0)
100명 미만	46 (28.4)	-	1 (100.0)	11 (57.9)	34 (23.9)
100명 이상 ~ 200명 미만	57 (35.2)	-	-	4 (21.1)	53 (37.3)
200명 이상 ~ 300명 미만	28 (17.3)	-	-	1 (5.3)	27 (19.0)
300명 이상 ~ 400명 미만	8 (4.9)	-	-	-	8 (5.6)
400명 이상 ~ 500명 미만	3 (1.9)	-	-	-	3 (2.1)
500명 이상 ~ 1,000명 미만	7 (4.3)	-	-	-	7 (4.9)
1,000명 이상	2 (1.2)	-	-	-	2 (1.4)
무응답	11 (6.8)	-	-	3 (15.8)	8 (5.6)
평균 (명)	192	-	65	81	206

3. 지역별 현황

명단공표 대상 사업장의 시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절반 정도가 수도권(서울 32.7%, 경기 15.4%)에 소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주 지역에는 명단공표 대상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업장 유형별로 보면, 명단공표 대상 지자체가 소재한 지역은 서울(1개소)지역으로

나타났으며, 이 밖의 지역의 미이행 지자체로 분류되었던 사업장 2개소(인천 1개소, 전남 1개소)는 모두 설치중인 사업장으로 분류되어 명단공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명단공표 대상 사업장인 학교와 기업은 서울·경기 비중이 높지만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1> 명단공표 대상 사업장의 지역별 현황

(단위: 개소, %)

시도	계	국가	지자체	학교	기업
전체	162 (100.0)	-	1 (100.0)	19 (100.0)	142 (100.0)
서울	53 (32.7)	-	1 (100.0)	5 (26.3)	47 (33.1)
부산	10 (6.2)	-	-	1 (5.3)	9 (6.3)
대구	7 (4.3)	-	-	-	7 (4.9)
인천	5 (3.1)	-	-	-	5 (3.5)
광주	1 (0.6)	-	-	-	1 (0.7%)
대전	2 (1.2)	-	-	1 (5.3)	1 (0.7%)
울산	5 (3.1)	-	-	-	5 (3.5)
경기	25 (15.4)	-	-	4 (21.1)	21 (14.8)
강원	6 (3.7)	-	-	2 (10.5)	4 (2.8)
충북	6 (3.7)	-	-	2 (10.5)	4 (2.8)
충남	5 (3.1)	-	-	1 (5.3)	4 (2.8)
전북	2 (1.2)	-	-	-	2 (1.4%)
전남	3 (1.9)	-	-	-	3 (2.1%)
경북	11 (6.8)	-	-	2 (10.5)	9 (6.3%)
경남	19 (11.7)	-	-	1 (5.3)	18 (12.7)
제주	-	-	-	-	-
세종	2 (1.2)	-	-	-	2 (1.4)

4. 미이행 사유 및 향후 이행계획

명단공표 대상 사업장의 미이행 사유는 <표 5-12>와 같다. 미이행 사유는 보육수요 부족, 재정부담, 장소확보 곤란, 기타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으며, 미이행 사유로 가장 많이 응답한 항목은 장소확보 곤란(39.7%)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장소확보 곤란에 이어서 보육수요 부족(22.2%), 재정 부담(18.4%), 기타(6.8%) 순으로 조사되었다.

사업장 유형별로 보면, 지자체 2개소는 재정 부담, 장소확보 곤란이라고 각각 응답하였으며, 학교는 장소확보 곤란이 30.3%로 가장 많았고, 재정부담 (24.2%), 보육수요 부족(21.2%) 순으로 응답하였다. 기업은 미이행 사유에 대해 장소확보 곤란 (41.2%), 보육수요 부족(22.6%), 재정 부담(17.1%)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5-12> 명단공표 대상 사업장의 미이행 사유

(단위 : 개소, %)

미이행 사유	계	국가	지자체	학교	기업
전체	234* (100.0)	-	2 (100.0)	33 (100.0)	199 (100.0)
보육수요 부족	52 (22.2)	-	-	7 (21.2)	45 (22.6)
재정 부담	43 (18.4)	-	1 (50.0)	8 (24.2)	34 (17.1)
장소확보 곤란	93 (39.7)	-	1 (50.0)	10 (30.3)	82 (41.2)
기타**	16 (6.8)	-	-	6 (18.2)	10 (5.0)
무응답	30 (12.8)	-	-	2 (6.1)	28 (14.1)

주) * 미이행 공표 사업장 162개소가 복수응답하여 전체사업장은 234개소임

** 환경오염 및 안전우려, 원거리 위치, 2~3교대 근무자 다수 등

명단공표 대상 사업장들의 향후 이행계획을 살펴보면 27.2%(44개소)는 향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15.4%(25개소)는 위탁보육을 통한 이행계획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명단공표 대상 사업장의 절반 이상이 이행계획이 없거나(31.5%), 해당 문항에 무응답(25.9%)한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5-13>.

〈표 5-13〉 명단공표 대상 사업장의 향후 이행계획

(단위 : 개소, %)

미이행 사유	계	국가	지자체	학교	기업
전체	162 (100.0)	-	1 (100.0)	19 (100.0)	142 (100.0)
설치	44 (27.2)	-	1 (100.0)	7 (36.8)	36 (25.4)
위탁보육	25 (15.4)	-	-	4 (21.1)	21 (14.8)
계획 없음	51 (31.5)	-	-	5 (26.3)	46 (32.4)
무응답	42 (25.9)	-	-	3 (15.8)	39 (27.5)



제6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결론

제2절 제언

제1절 결론

본 조사연구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를 위한 조사 사업으로서 그 의미가 매우 큰 조사연구라 할 수 있다.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기관의 수는 2,662개소로 조사되었으나 현행 영유아보육법령상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은 1,074개소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2013년도의 919개소보다 155개소가 증가한 수치이다.

조사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 1,074개소 중에서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사업장은 877개소(81.7%)이고, 이들 중 직장어린이집을 직접 설치한 사업장은 534개소(49.7%)이며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사업장은 242개소(22.5%), 위탁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은 101개소(9.4%)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형별로 이행률을 살펴보면, 국가기관의 경우 약 91%가 이행중이며 9%가 미이행 사업장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이들 사업장 모두 현재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명단공표 대상 사업장에서 제외되어 국가기관은 미이행으로 인해 명단이 공표되는 사업장이 전무한 상황이다. 지자체의 경우 단지 2%(3개소)의 사업장만 미이행 사업장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들 중 2개소도 현재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것으로 조사되어 결국 미이행 사업장은 1개소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해당 미이행 사업장은 서울소재 기관으로 상시근로자 수는 603명, 상시 여성근로자수 267명, 보육대상 영유아수 65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이행 사유로는 재정부담과 장소확보곤란의 이유를 들었으며 향후에 직장어린이집을 직접 설치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하였기에 이에 대한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를 고려할 때 국가기관과 지자체 기관 중에서 현재 공표대상 사업장 명단에 포함된 기관은 1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이행률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학교의 경우 대상 사업장이 95개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73개소(76.8%)가

이행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2개소가 미이행 사업장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2개 미이행 사업장 중 3개소가 현재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중인 것으로 조사되어 명단공표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나머지 19개소는 미이행 사업장으로 명단이 공표되었다.

기업의 경우 대상사업장이 714개소이며 이들 중 552개소(77.3%)가 설치의무 이행 사업장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업에 포함된 사업장 중 ‘공사 등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81개소이며 이들 중 74개소가 설치의무 이행 사업장인 것으로 조사되어 일반기업과 비교해 보았을 때 이행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올해 조사결과를 전년도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이행률은 74.3%에서 81.7%로 7.4%p 상승하였고 직장어린이집 직접설치 비율도 전년대비 10.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설치의무 이행 기업 비율이 늘고 특히 **직장어린이집**을 직접 설치한 비율이 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명단공표 수단이 어느 정도 실효성을 거두고 있다고 여겨진다.

다만 향후에 보육수당 지급을 통한 설치의무 이행이 폐지되고 직접설치 또는 위탁보육을 통해서만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변화를 사업장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2절 제언

1. 대상 사업장 선정 자료 확보

본 조사연구에서 국민건강보험과 고용보험에서 제공하고 있는 근로자수를 바탕으로 대상사업장을 선정함에 따라 해당 자료가 단일 사업장 단위의 근로자 수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3장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고용보험 자료의 특성상 사업장 단위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별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분산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1개의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분산된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통계를 제공하고 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기준으로 대상사업장이 된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교육지원청 근로자 수의 경우 산하 교육기관의 교직원이 포함된 수치이며, 경찰청 근로

자 수의 경우 소속 지구대 인력이 포함되며, 도청의 경우 산하 주민자치센터 직원을 포함한 근로자 수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기업·기관이 최종적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조사도 함께 실시하였다. 비해당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분산 및 근무지 분산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바탕으로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 여부를 판단하였다. 향후 실태 조사시에는 좀 더 효율적으로 대상 사업장을 선정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협조 하에 고용보험 등록 사업장의 하위 사업장 코드를 함께 확보하여 사전에 해당기업·기관의 근로자수가 단일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의미하는지 다수의 단위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모두 포괄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대상 사업장을 선정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대상 사업장을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추가로 여러 지역에 산재해 있는 다수의 건물관리 및 청소용역을 하는 업체, 건설현장에 파견되는 건설근로자 용역업체 등 사업의 특성상 근로자들이 동일사업장에 근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자 등록증상에 등록된 업종이나 고용보험 자료에서 제공하는 업종코드 등을 이용하여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에서 제외시키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더불어 전년도 조사에서 사업장 분산이 명확하게 증명된 사업장의 경우 사전에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2. 조사기관

영유아보육법상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이행의 조사기관은 보건복지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교육부, 시·도로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 장관은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인 사업장, 시·도지사의 경우 해당 시·도의 관할 구역에 있는 지방행정기관인 사업장,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제외한 사업장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 20조의 2). 이에 따라 교육부와 시·도지사는 담당 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의 대다수(66.5%)가 기업인 점을 고려할 때, 고용노동부와 유기적인 협조 하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를 조사기관으로 규정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업과 해당근로자들과의 연관성 및 그들에 대한 영향력과 산하조직(고용센터)의 활용 등을 고려할 때, 보건

복지부를 조사기관으로 하는 것보다 고용노동부를 조사 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이 조사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의 명단공표를 2015년 부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는 것도 이의 필요성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해당 조사사업은 매년 실시해야 하는 사업으로 조사수행 체계를 명확히 하여 실태조사가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협조가 필요하다.

3. 웹사이트 상 조사표 제공

본 연구를 위한 실태조사는 우편조사의 방법으로 이루어 졌다. 각각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에 1차적으로 조사표를 우편발송을 하고, 이후에 분실 등의 이유로 조사표를 추가로 요청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을 이용하여 조사표를 다시 제공하였다. 향후에는 1차적으로 각각의 사업장에 조사표를 우편으로 발송한 이후에 요청되는 건에 대해서는, 조사 수행 기관 또는 관련부처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손쉽게 조사표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관련 홈페이지에 실태조사 관련 안내사항을 다루는 배너를 설치하여 조사표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사업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태조사 관련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면, 실태조사에 대한 홍보효과와 함께 조사대상 사업장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4. 조사표 내용의 수정 및 보완

본 조사연구를 실시함에 있어서 현행 조사표의 문항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일부 문항의 경우 무응답률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난 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조사표의 조사항목을 실태조사에 반드시 필요한 항목(영유아보육법상 규정하고 있는 항목)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문항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보다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사문항에 대한 개선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5. 조사사업의 홍보 강화

본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본 조사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해당 사업장이 어떠한 이유로 본 조사에 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 사례가 다수 있었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해당 조사에 대한 충분한 홍보를 통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실태조사에 대한 사업장의 이해도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조사사업에 대한 홍보와 함께 설치의무 이행수단으로서 보육수당 지급이 2015년 조사부터 더 이상 인정이 안 된다는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홍보하고, 사업장에서 그에 따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위탁보육을 할 경우 설치의무 이행의 대체수단으로서 기능하기 위한 최소한의 위탁료에 대한 안내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제도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함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한 홍보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6. 판단기준 및 소명자료 개선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명단 공표시 제외되는 사례를 3가지로 제한하고 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이 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건축비용의 일부를 집행하는 등 직장어린이집 설치 중인 경우, 상시근로자의 특성상 보육수요가 없는 등 명단의 공표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명시하고 있다. 이들에 대해서 어떤 자료로 해당내용에 대한 증빙을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사항을 좀 더 명확히 하고 본 조사사업을 바탕으로 증빙자료에 대한 구체적 안내문을 함께 첨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조사사업을 진행하는 기관이나 사업장 입장에서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판단함에 있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http://www.escac.or.kr/>

김미정·김은기·원종욱·황해익(2012). 기업의 직장보육서비스 지원 사례 및 효과성 분석.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김정호 (2013). 직장보육시설과 여성의 고용안정. 노동정책연구. 13 (2). pp. 127-154.

김태홍(2001).기업의 가족친화적인 고용제도의 도입현황과 과제. 한국여성개발원.

보건복지부(2014). 2014년도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3.1.30.).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최초 공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4.4.29.). 직장어린이집 직접 설치 사업장 대폭 증가.

보건복지부(2013). 보육통계.

부 록 <<

[부록 1] 조사표

2014년도 직장어린이집 설치현황 실태조사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 -

사업장 코드 (연구진 작성)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제14조의2 (직장 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 등)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들의 일반현황 및 설치의무 이행사항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입니다. 귀사는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기준으로 설치의무 사업장에 해당됩니다.

본 조사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여부”를 판단하는데 활용됩니다. 작성해주신 내용은 통계법에 의해 비밀이 보호되고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조사 결과는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와 관련제도 개선의 중요한 근거가 되으며 미회신시 미이행 사업장으로 분류될 수 있사오니, 귀 사에서는 각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작성된 설문지는 아래의 주소지로 1월 21일 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월

- 우편 송부 : (122-705)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3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본부 (신관 203호) 유재언 연구원
- 이메일 송부 : jaeon0205@khasa.re.kr
- ※ 관련 문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유재언(02-380-1680)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업장명				업종	
소재지					
담당자	부서명		연락처	(e-mail)	
				(H.P)	

I. 사업장 상시 근로자 현황 (* 조사기준일: '13. 12. 31)

구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전체
남성						
여성						
전체						

주1) '사업장' : 사업이 행하여지고 있는 인력·물적 시설이 존재하는 장소적 범위를 중심으로 함

주2) '상시 근로자' : 임시직, 정규직, 일용직 등을 총망라하여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를 말함 ('13.1월~'13.12월의 매월 말일 기준 근로자수를 더한 후 12개월로 나누어 산정)

* 본사의 지사 사무소등이 동일 장소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수를 별도 산정

II. 보육수요 현황 (* 조사기준일: '13. 12. 31)

		구 분	근로자 자녀수
		만0세 ('12.1.1 이후 출생)	명
2-1	취학 전 아동 수	만1세 ('11.1.1 ~ '11.12.31)	명
		만2세 ('10.1.1 ~ '10.12.31)	명
		만3세 ('09.1.1 ~ '09.12.31)	명
		만4세 ('08.1.1 ~ '08.12.31)	명
		만5세 ('07.1.1 ~ '07.12.31)	명
		총원	명
		2-2	수유편의시설 설치여부

III. 직장 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여부

3-1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여부	<input type="checkbox"/> 이행	이행방법
			<input type="checkbox"/> 어린이집 설치 (☞ IV. 조사표 2쪽)
			<input type="checkbox"/> 위탁보육 (☞ V. 조사표 3쪽)
		<input type="checkbox"/> 보육수당 지급 (☞ VI. 조사표 4쪽)	
		<input type="checkbox"/> 미이행	(☞ VII. 조사표 5쪽)

IV. 직장어린이집 설치 사업장(문항 III.에서 어린이집 설치 이행으로 응답한 경우만 작성)

4-1	어린이집 현황	어린이집명	
		소재지	
		인가일	
4-2	보육아동	정원	명
		현원	명
		사업장소속 자녀 수	명
4-3	운영 형태	<input type="checkbox"/> 직영	
		<input type="checkbox"/> 위탁	위탁업체명 ()
4-4	매월 1인당 보육료 수납현황	만 0세	원 명
		만 1세	원 명
		만 2세	원 명
		만 3세	원 명
		만 4세	원 명
		만 5세 이상	원 명
4-5	운영비 및 사업주 지원 금액	월 운영비 총액 ()	원
		월 고용보험기금 지원액 ()	원
		월 사업주 지원액 ()	원
4-6	설치 형태	<input type="checkbox"/> 단독	
		<input type="checkbox"/> 공동	대표사업장명단() 공동설치참여사업장 명단 { }, { }, { } { }, { }, { }
4-7	설치 위치	<input type="checkbox"/> 산업단지 내	<input type="checkbox"/> 국가산업단지 <input type="checkbox"/> 농공단지 <input type="checkbox"/> 일반산업단지 <input type="checkbox"/> 자유무역 <input type="checkbox"/> 도시첨단 <input type="checkbox"/> 외국인투자지역 <input type="checkbox"/> 기타 ()
		<input type="checkbox"/> 산업단지 외 기타지역	
4-8	증빙자료	<input type="checkbox"/> 어린이집 인가증 사본, (공동)설치 관련 문서, (*조사표와 함께 송부)	
4-9	공공기관 또는 고용보험기금으로 부터 운영비 지원 여부	<input type="checkbox"/> 지원 받음 <input type="checkbox"/> 대기업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지원 받지 않음 사유 (예: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아님, 국가, 지자체, 교육기관, 병원 등)	
4-10	공공기관 또는 고용보험기금으로 부터 지원받고 있는 원장, 보육교사, 취사부, 기타 지원인력	원장	명
		보육교사	명
		취사부	명
		기타 지원인력	명
		총	명

V. 위탁보육 실시 사업장 주) (문항 III.에서 위탁보육 이행으로 응답한 경우만 작성)

주) 위탁계약서에 위탁기간,보육비용 등이 명시된 경우 이행으로 인정

5-1	어린이집 명													소재지												
5-2	위탁보육 기간																									
5-3	위탁보육 지원액 및 인원	구분		지원 단가				지원 인원																		
		만 0세		원																						
		만 1세		원																						
		만 2세		원																						
		만 3세		원																						
		만 4세		원																						
		만 5세		원																						
총 액		원																								
5-4	위탁보육 비용 (월 총액)																									
5-5	1인당 지원액																									
5-6	월별 위탁보육 인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5-7	증빙 자료	<input type="checkbox"/> 위탁계약서 사본 (※조사표 회신 시 함께 송부)																								
5-8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사유 (복수선택 가능)																									
	<input type="checkbox"/> 보육수요 부족					<input type="checkbox"/> 보육 아동이 부족한 경우(명)					<input type="checkbox"/> 부모 이용 수요가 없는 경우(명)															
	<input type="checkbox"/> 재정 부담(추정 금액)					어린이집 직접 설치 시(원)																				
	<input type="checkbox"/> 장소확보 곤란 (복수 응답 가능)					<input type="checkbox"/> 사업장 건물의 임대료가 비싸서																				
						<input type="checkbox"/> 사업장 50m 이내 위험물(주유소 등) 소재																				
<input type="checkbox"/> 기타(우측에 구체적으로 기술)					<input type="checkbox"/> 사업장 인근에 적정한 부지나 건물이 없어서																					
					<input type="checkbox"/> 사업장 인근의 유해환경(여관 등) 때문에																					
					<input type="checkbox"/> 기타()																					
5-9	향후 직장어린이집 설치 계획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2014년 중									
																			<input type="checkbox"/> 2015년 중			<input type="checkbox"/> 2016년 이후				
															<input type="checkbox"/> 없음											
5-10	직장어린이집 설치 관련 건의사항																									

VI. 보육수당 지급 사업장(문항 III.에서 보육수당지급 이행으로 응답한 경우만 작성)

6-1	보육수당 지급 기간	2013년 ()월 ~ 현재		
6-2	보육수당 지급 금액(월) ^{주)} 및 지원인원	구분	지원 단가 (월)	지원 인원
		만 0세	원	명
		만 1세	원	명
		만 2세	원	명
		만 3세	원	명
		만 4세	원	명
		만 5세	원	명
총 액	원	명		
주) 분기별로 지급하는 경우 월 금액으로 환산하여 기재하되,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 시 이행으로 인정 - “일반현황”의 보육수요와 “보육수당 지급 사업장”의 보육수당 지원 인원이 동일 - 보육수당이 연령별 정부보육료 지원 단가의 50% 이상 ※ 보육료 단가: 만0세 394천원, 만1세 347천원, 만2세 286천원, 만3-5세 누리공통과정 220천원				
6-3	보육수당 지급 총액 (월 총액)	원		
6-4	지급 근거 (증빙자료 첨부)	<input type="checkbox"/> 지급계회관련 내부결재 서류, 회계증빙자료 (*조사표 회신 시 함께 첨부)		
6-5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사유 (복수선택 가능)			
	<input type="checkbox"/> 보육수요 부족	<input type="checkbox"/> 보육 아동이 부족한 경우(명) <input type="checkbox"/> 부모 이용 수요가 없는 경우(명)		
	<input type="checkbox"/> 재정 부담(추정 금액)	어린이집 직접 설치 시(원)		
	<input type="checkbox"/> 장소확보 곤란 (복수 응답 가능)	<input type="checkbox"/> 사업장 건물의 임대료가 비싸서 <input type="checkbox"/> 사업장 50m 이내 위험물(주유소 등) 소재 <input type="checkbox"/> 사업장 인근에 적정한 부지나 건물이 없어서 <input type="checkbox"/> 사업장 인근의 유해환경(여관 등) 때문에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기타(우측에 구체적으로 기술)			
6-6	향후 직장어린이집 설치 계획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2014년 중 <input type="checkbox"/> 2015년 중 <input type="checkbox"/> 2016년 이후	
		<input type="checkbox"/> 없음		
6-7	직장어린이집 설치 관련 건의사항			

VII.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문항 III.에서 미이행으로 응답한 경우만 작성)

7-1	미이행 사유 (복수선택 가능)	
	<input type="checkbox"/> 보육수요 부족	<input type="checkbox"/> 보육 아동이 부족한 경우(명) <input type="checkbox"/> 부모 이용 수요가 없는 경우(명)
	<input type="checkbox"/> 재정 부담(추정 금액)	어린이집 설치 시(원)
		보육수당 지급 시(원)
		위탁보육 실시 시(원)
<input type="checkbox"/> 장소확보 곤란 (복수 응답 가능)	<input type="checkbox"/> 사업장 건물의 임대료가 비싸서 <input type="checkbox"/> 사업장 50m 이내 위험물(주유소 등) 소재 <input type="checkbox"/> 사업장 인근에 적정한 부지나 건물이 없어서 <input type="checkbox"/> 사업장 인근의 유해환경(여관 등) 때문에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기타(우측 공란에 구체적으로 기술)		
7-2	향후 의무이행 방법과 시기	
	이행방법	<input type="checkbox"/>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행시기 <input type="checkbox"/> 2014년 중 <input type="checkbox"/> 2015년 중 <input type="checkbox"/> 2016년 이후
		<input type="checkbox"/> 위탁보육
<input type="checkbox"/> 계획없음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 사유:		
7-3	직장어린이집 설치 관련 건의사항	

2014. . .

작성자 ^{주)}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작성자 ^{주)}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주) 사업장 담당자

_____ 이 하 작 성 금 지 _____

최종판단	<input type="checkbox"/> 이행	<input type="checkbox"/> 미이행
------	-----------------------------	------------------------------

[부록2] 상시 근로자 연령에 따른 현황

<부록표 2-1>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 상시 근로자의 연령대별 수에 따른 이행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의무사업장 (A=B+C)	이행 (B)				미이행 (C)	
		계	설치	수당	위탁		
전체	1,074	877	534	242	101	197	
10대	100명 미만	1,055	860	517	242	101	195
	100 ~ 199명	9	7	7	0	0	2
	200 ~ 299명	6	6	6	0	0	0
	300 ~ 399명	1	1	1	0	0	0
	400 ~ 499명	2	2	2	0	0	0
	500명 이상	1	1	1	0	0	0
20대	100명 미만	474	393	223	138	32	81
	100 ~ 199명	230	171	103	45	23	59
	200 ~ 299명	114	88	52	25	11	26
	300 ~ 399명	66	54	32	13	9	12
	400 ~ 499명	51	44	28	4	12	7
	500명 이상	139	127	96	17	14	12
30대	100명 미만	143	119	75	34	10	24
	100 ~ 199명	201	150	62	66	22	51
	200 ~ 299명	214	167	95	54	18	47
	300 ~ 399명	140	106	69	25	12	34
	400 ~ 499명	103	82	45	22	15	21
	500명 이상	273	253	188	41	24	20
40대	100명 미만	191	145	100	33	12	46
	100 ~ 199명	212	141	66	47	28	71
	200 ~ 299명	225	190	86	77	27	35
	300 ~ 399명	149	125	82	31	12	24
	400 ~ 499명	76	70	40	21	9	6
	500명 이상	221	206	160	33	13	15
50대	100명 미만	438	336	199	93	44	102
	100 ~ 199명	255	204	121	56	27	51
	200 ~ 299명	136	119	59	41	19	17
	300 ~ 399명	62	54	28	18	8	8
	400 ~ 499명	49	44	30	13	1	5
	500명 이상	134	120	97	21	2	14

〈부록표 2-2〉 직장어린이집 직접설치 사업장 상시 근로자의 연령대 및 유형별 현황

(단위 : 개소, 명)

연령대	계	국가	지자체	학교	기업	
전체	534	83	78	33	340	
10대	100명 미만	517	82	78	33	324
	100 ~ 199명	7	0	0	0	7
	200 ~ 299명	6	0	0	0	6
	300 ~ 399명	1	0	0	0	1
	400 ~ 499명	2	1	0	0	1
	500명 이상	1	0	0	0	1
	평균 (명)	26	17	1	1	31
20대	100명 미만	223	57	68	11	87
	100 ~ 199명	103	2	6	15	80
	200 ~ 299명	52	1	3	3	45
	300 ~ 399명	32	3	1	4	24
	400 ~ 499명	28	5	0	0	23
	500명 이상	96	15	0	0	81
	평균 (명)	372	298	69	145	477
30대	100명 미만	75	25	16	6	28
	100 ~ 199명	62	12	6	5	39
	200 ~ 299명	95	11	14	8	62
	300 ~ 399명	69	11	21	4	33
	400 ~ 499명	45	5	9	6	25
	500명 이상	188	19	12	4	153
	평균 (명)	738	441	370	317	921
40대	100명 미만	100	25	13	3	59
	100 ~ 199명	66	5	3	4	54
	200 ~ 299명	86	20	11	6	49
	300 ~ 399명	82	13	19	6	44
	400 ~ 499명	40	9	13	2	16
	500명 이상	160	11	19	12	118
	평균 (명)	627	407	482	440	721
50대	100명 미만	199	32	14	5	148
	100 ~ 199명	121	29	14	3	75
	200 ~ 299명	59	12	6	1	40
	300 ~ 399명	28	2	11	6	9
	400 ~ 499명	30	3	13	3	11
	500명 이상	97	5	20	15	57
	평균 (명)	416	219	453	487	440

〈부록표 2-3〉 보육수당 지급 사업장 상시 근로자의 연령대 및 유형별 현황

(단위 : 개소)

상시 근로자 연령대	계	국가	지자체	학교	기업	
전체	242	7	70	33	132	
10대	100명 미만	242	7	70	33	132
	100 ~ 199명	0	0	0	0	0
	200 ~ 299명	0	0	0	0	0
	300 ~ 399명	0	0	0	0	0
	400 ~ 499명	0	0	0	0	0
	500명 이상	0	0	0	0	0
	평균 (명)	4	38	1	1	6
20대	100명 미만	138	5	63	13	57
	100 ~ 199명	45	0	7	13	25
	200 ~ 299명	25	1	0	4	20
	300 ~ 399명	13	0	0	1	12
	400 ~ 499명	4	0	0	0	4
	500명 이상	17	1	0	2	14
	평균 (명)	186	172	48	208	257
30대	100명 미만	34	3	9	6	16
	100 ~ 199명	66	1	32	12	21
	200 ~ 299명	54	0	16	8	30
	300 ~ 399명	25	0	8	4	13
	400 ~ 499명	22	1	4	2	15
	500명 이상	41	2	1	1	37
	평균 (명)	368	404	217	273	473
40대	100명 미만	33	3	6	1	23
	100 ~ 199명	47	1	14	9	23
	200 ~ 299명	77	1	30	8	38
	300 ~ 399명	31	0	11	4	16
	400 ~ 499명	21	1	4	4	12
	500명 이상	33	1	5	7	20
	평균 (명)	338	313	283	385	357
50대	100명 미만	93	4	11	1	77
	100 ~ 199명	56	2	20	5	29
	200 ~ 299명	41	0	23	7	11
	300 ~ 399명	18	1	6	5	6
	400 ~ 499명	13	0	5	6	2
	500명 이상	21	0	5	9	7
	평균 (명)	235	159	259	498	156

〈부록표 2-4〉 위탁보육 사업장 상시 근로자의 연령대 및 유형별 현황

(단위 : 개소, 명)

상시 근로자 연령대	계	국가	지자체	학교	기업	
전체	101	10	4	7	80	
10대	100명 미만	101	10	4	7	80
	100 ~ 199명	0	0	0	0	0
	200 ~ 299명	0	0	0	0	0
	300 ~ 399명	0	0	0	0	0
	400 ~ 499명	0	0	0	0	0
	500명 이상	0	0	0	0	0
	평균 (명)	6	0	1	0	8
20대	100명 미만	32	4	4	3	21
	100 ~ 199명	23	1	0	3	19
	200 ~ 299명	11	1	0	1	9
	300 ~ 399명	9	0	0	0	9
	400 ~ 499명	12	2	0	0	10
	500명 이상	14	2	0	0	12
	평균 (명)	252	290	49	125	266
30대	100명 미만	10	1	1	0	8
	100 ~ 199명	22	1	2	5	14
	200 ~ 299명	18	1	0	0	17
	300 ~ 399명	12	1	0	2	9
	400 ~ 499명	15	4	0	0	11
	500명 이상	24	2	1	0	21
	평균 (명)	412	407	294	184	437
40대	100명 미만	12	1	1	0	10
	100 ~ 199명	28	1	2	3	22
	200 ~ 299명	27	4	0	3	20
	300 ~ 399명	12	1	0	0	11
	400 ~ 499명	9	2	1	0	6
	500명 이상	13	1	0	1	11
	평균 (명)	342	327	282	266	353
50대	100명 미만	44	4	1	1	38
	100 ~ 199명	27	3	0	1	23
	200 ~ 299명	19	1	1	2	15
	300 ~ 399명	8	1	2	2	3
	400 ~ 499명	1	1	0	0	0
	500명 이상	2	0	0	1	1
	평균 (명)	162	186	281	343	138

〈부록표 2-5〉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연령대 및 유형별 현황
(단위 : 개소, 명)

연령대	계	국가	지자체	학교	기업	
전체	197	10	3	22	162	
10대	100명 미만	0	10	3	22	160
	100 ~ 199명	0	0	0	0	2
	200 ~ 299명	0	0	0	0	0
	300 ~ 399명	0	0	0	0	0
	400 ~ 499명	0	0	0	0	0
	500명 이상	0	0	0	0	0
	평균 (명)	11	0	0	0	1
20대	100명 미만	81	10	3	8	60
	100 ~ 199명	59	0	0	11	48
	200 ~ 299명	26	0	0	3	23
	300 ~ 399명	12	0	0	0	12
	400 ~ 499명	7	0	0	0	7
	500명 이상	12	0	0	0	12
	평균 (명)	189	44	44	131	73
30대	100명 미만	24	2	0	7	15
	100 ~ 199명	51	3	2	5	41
	200 ~ 299명	47	3	0	6	38
	300 ~ 399명	34	1	0	3	30
	400 ~ 499명	21	1	1	1	18
	500명 이상	20	0	0	0	20
	평균 (명)	335	156	259	185	108
40대	100명 미만	46	2	0	1	43
	100 ~ 199명	71	1	0	9	61
	200 ~ 299명	35	4	1	5	25
	300 ~ 399명	24	1	1	5	17
	400 ~ 499명	6	0	0	1	5
	500명 이상	15	2	1	1	11
	평균 (명)	263	338	459	257	131
50대	100명 미만	102	6	0	1	95
	100 ~ 199명	51	4	2	8	37
	200 ~ 299명	17	0	0	5	12
	300 ~ 399명	8	0	0	4	4
	400 ~ 499명	5	0	0	1	4
	500명 이상	14	0	1	3	10
	평균 (명)	183	115	356	312	194

[부록 3]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 ①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본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자산 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된 회사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그 사업주가 하는 모든 사업에서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의 근로자 수(건설업에서는 일용근로자의 수는 제외한다)의 한계를 전년도의 조업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한 수로 하되,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산정한다. 이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는 0.5명으로 하여 산정하고,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 2. 하나의 사업주가 둘 이상의 산업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산업을 기준으로 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같은 경우에는 임금총액, 매출액 순으로 그 기준을 적용한다.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주에 대하여는 보험관계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별표 1]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 (제12조제1항 관련)

산업분류	분류기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1. 제조업	C	500명 이하
2. 광업	B	300명 이하
3. 건설업	F	
4. 운수업	H	
5.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9. 도매 및 소매업	G	
10. 숙박 및 음식점업	I	
11. 금융 및 보험업	K	
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13.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주: 업종의 구분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